

FTA 농업분야 협상 동향

2014. 11. 27.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목 차

1	FTA 협상 추진 동향	7
2	한·중 FTA	10
3	한·호주 FTA	30
4	한·캐나다 FTA	38
5	한·뉴질랜드 FTA	45
6	영연방 FTA 대책	62
7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64
8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66
9	한·중·일 FTA	68
10	한·베트남/인도네시아 FTA	71

1 FTA 협상 추진 동향

가 박근혜정부 FTA추진계획

- 박근혜정부에서도 신규 FTA추진, 추가자유화 등 FTA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비중있게 추진될 전망
- 동아시아 역내국가 및 신흥 시장국과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계획

FTA 네트워크 추진계획(국정과제)

- 동아시아 역내통합을 주도하고, 주요 전략국 및 자원부국과의 FTA 추진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
 -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 동태적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한중 및 한중일 FTA를 추진하되,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민감분야를 보호
 - RCEP(역내 포괄적 경제협정) 등 다자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TPP(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등 아태 경제통합 논의도 면밀하게 검토
 - * RCEP 참여국 : ASEAN(주도) + 6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 * TPP : 미국(주도)포함, 환태평양 12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참여
 -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동 자원부국과의 FTA 추진 여건 조성

나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발효 및 타결 (14건 52개국)	협상 중 (7건 20개국)	협상 준비 (7건 19개국)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중·일, RCEP, 일본, 멕시코, GCC,	MERCOSUR, 말레이시아, 러시아, 이스라엘
* : 타결(정식서명)	* : 협상재개 여건조성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몽골, 중미

□ 52개국과 14건의 FTA 발효 및 체결(농산물 수입액의 77.7% 점유, '13)

- '12년 타결된 한-터키 FTA는 '13.5.1일 발효, 한-콜롬비아('12.6월 타결) FTA는 정식서명('13.2.21) 후 국회비준 동의('14.4.29)
- 한-호주 FTA는 '13.12.4 실질 타결 선언, '14.2.10 가서명 및 4.8. 타결
- 한-캐나다 FTA는 '14.3.11 실질 타결 선언, '14.6.12 가서명 및 9.23 타결
- 한-중 FTA는 '14.11.10. 실질 타결 선언 한-뉴질랜드 FTA는 '14.11.15. 타결 선언

□ 한·중·일, 베트남, RCEP 등 7건(20개국)의 FTA 협상 중

-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협력확대 등의 연계 논의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 추가 개방이 최소화되도록 대응

* 인도네시아 7차례('12.7, '12.12, '13.5, '13.7, '13.9, '13.11, '14.2.), 베트남 7차례('12.9, '13.5, '13.10, '14.3, '14.5, '14.7, '14.9.) 공식 협상 개최

- **RCEP**^{*} ('13.5·9, '14.1·4·6) 및 **한·중·일** ('13.3·7·11, '14.3·9) FTA는 협상의 기본지침, 범위 등 논의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중국, 일본이 참여 중인 타 FTA 협상 추진동향, 기존 FTA 양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 MERCOSUR, 중미 등 7건(19개국)의 FTA는 FTA 타당성 검토 및 민간공동연구 등 협상여건 조성 중

□ TPP는 환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로서, TPP 참여국간 '14.11월 TPP 각료회의를 통한 원칙적 합의 후 연내 타결 추진 전망

- 우리나라는 '13.11.29 TPP 관심 표명 후 TPP 참여국과 참여 가능성 타진을 위한 예비 양자협의를 중

참 고

FTA 추진 현황

구 분	상대국	추진 상황	'13 농산물수입 ¹⁾	
			수입액 (백만불)	비중(%)
발효 및 타결	칠레	○ '99.12. 협상개시→ '04.4. 발효	383	1.61%
	싱가포르 ²⁾	○ '04. 1. 협상개시→ '06.3. 발효	116	0.49%
	EFTA	○ '05. 1. 협상개시→ '06.9. 발효	77	0.32%
	아세안	○ '05. 2. 협상개시→ '07.6. 발효	2,741	11.52%
	인도	○ '06. 3. 협상개시→ '10.1. 발효	994	4.18%
	EU	○ '07. 5. 협상개시→ '11.7. 발효	2,808	11.80%
	페루	○ '09. 3. 협상개시→ '11.8. 발효	59	0.25%
	미국	○ '06. 6. 협상개시→ '12.3.15 발효	5,096	21.42%
	터키	○ '10. 4. 협상개시→ '13.5.1 발효	57	0.24%
	콜롬비아	○ '09.12. 협상개시, '12.6.25 실질타결, '13.2.21 서명완료 ○ '14.4.29. 국회비준 동의	75	0.31%
	호주	○ '09. 5. 협상개시, 7차례 협상 ○ '13.12.4 실질 타결 선언, '14. 2. 10. 가서명, '14. 4. 8. 정식서명	2,310	9.71%
	캐나다	○ '05. 7. 협상개시, 13차례 협상 ○ '14.3.11 실질 타결, '14.6.12. 가서명, '14. 9. 22. 정식서명	417	1.75%
	중국	○ 공동연구('05.~'10.5), '12.5.2 협상개시 선언, 14차례 협상 ○ '14.11.10 실질 타결 선언	2,889	12.14%
	뉴질랜드	○ '09.6. 협상개시, '14.10.15~17 제9차 협상, '14.11.15 타결 선언	479	2.01%
소 계		14건 52개국	18,385	77.75%
협상 중	RCEP	○ 아세안+6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선언('12.11.20) ○ 1차-'13.5.9~13 2차- 9.23~27, 3차-'14.1.20~24, 4차-'14.3.31~44 5차-'14.6.21~6.27	9,755	41.00%
	인도네시아 ²⁾	○ 공동연구(1~3차, '11.7.9,10월), '12.3.28. 협상개시 선언 ○ 1차-'12.7.11~12, 2차-'12.10~11, 3차-'13.5.29~31, 4차-'13.7.18~22, 5차-'13.8.13, 6차-'14.1.4~8, 7차-'14.2.25~28	434	1.83%
	베트남 ²⁾	○ 공동연구('10.6~'11.10), '12.8.6 협상개시 ○ 1차-'12.9.3~4 2차-'13.5.22~24 3차-'10.16~18 4차-'14.3.11~14 5차-'14.5.20~23 6차-'14.7.28~31, 7차-'14.9.29~10.2 8차-'11.17~22	328	1.38%
	한·중·일 ²⁾	○ 아세안+6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12.11.20), ○ 1차-'13.3.26~28, 2차-'7.30~8.2, 3차-'11.26~29, 4차-'14.3.4~7, 5차-'14.9.1~5	3,232	13.58%
	재개 준비 중 (3 건)	멕시코 ○ '07.12. 협상개시, 2차례 협상	67	0.28%
	일본	○ 협상개시 및 중단('03.12~'04.11(6차)), 협상재개 실무협의 10차례 개최('08.6~'12.6)	343	1.44%
	GCC	○ '08.7. 협상개시, 3차례 협상	29	0.12%
	소 계	7건 20개국	6,473	27.25%
준비 중	MERCOSUR	○ 민간공동연구('05.5~'06.11)	3,864	16.24%
	기타	○ 말레이시아 ²⁾ ,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몽골, 중미	1,053	4.43%
	소 계	7건, 19개국	4,917	20.67%
합 계		28건 78개국(중복국가 제외)	22,568	94.85%
농산물 전체			23,794	100.00%

1) 우리나라 전체상품 수입액 : 519,581백만불

2) 국가수 및 수입액(비중)은 중복 미포함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동남아국가 연합10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EU(유럽연합28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GCC(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 5개국 ;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5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RCEP(역내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16개국;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3) ② : 우리나라와 FTA를 중복 체결한 국가를 나타냄

I. 추진 경과

□ 한·중 민간공동연구('05~'06) 및 산관학 공동연구('07~'10.5) 완료

□ '12.1.9 한 · 중 정상회담 계기, 우리측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

* (국내절차) 한중 FTA 공청회('12.2.24), FTA 추진위원회('12.4.13), 대외경제 장관회의('12.4.16), 국회보고('12.4.23) 등 국내절차 진행

* (대외절차) 중국과 협상운영세칙 등에 대한 사전협의 진행('12.3~4월)

□ '12.5.2 한·중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 · 중 FTA 협상 개시 선언 및 공동성명문* 발표

* 단계별 협상, 상품분야 초민감/민감/일반품목군 설치, 역외가공지역 등 포함

□ 협상개시 선언 이후 1단계 모델리티(협상의 틀) 협상을 추진하였고, 제7차 협상('13.9, 웨이팡)에서 한중 FTA 모델리티 타결

*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분야(농수산물협력, SPS)의 모델리티 합의

□ 제8차 협상부터 2단계 협상 개시,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제14차 협상('14.11.4~6, 북경)에서 상품양허, 원산지 등에 대해 합의 도출

* 8차('13.11, 인천), 9차('14.1, 시안), 10차('14.3, 고양), 11차('14.5, 메이산), 12차('14.7, 대구), 13차('14.9, 북경)

□ '14.11.10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은 한 · 중 FTA 실질 타결 공식 선언

* 양국 정상은 일부 기술적인 잔여 사안을 연내 마무리토록 지시

◆ 품목별 전문가회의, 설명회 등 총 180여회 의견 수렴 실시

II. 주요 결과

1 농산물 양허

우리측 양허

가. 개요

◆ 전체 농산물(1,611개) 중 초민감품목은 581개(36.1%),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은 589개(36.6%)로 합의

* (일반) 10년내 철폐, (민감)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민감) 양허제외/TRQ/부분감축

◆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비중이 63.4%(1,022개)로 기 체결 FTA를 상회

* (미국) 12.2% (EU) 14.5% (캐나다) 18.5% (칠레) 29.7% (호주) 38.5%

□ (초민감품목) 초민감품목 581개중 548개(94.3%) 대해 양허제외, 7개(1.2%) TRQ, 26개(4.5%) 부분감축으로 합의

○ (양허제외)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은 양허제외

* (미국) 1.0%(16개), (EU) 2.8%(41개), (호주) 10.5%(158개), (캐나다) 14.1%(211개)

○ (TRQ) 이미 WTO/TRQ를 통해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 도모

* TRQ 물량(고정) : 대두 10천톤, 참깨 24, 고구마전분 5, 팔 3, 기타사료 38, 맥아 5

○ (부분감축) 대중 수입이 많은 국내 민감품목은 부분 감축으로 합의하여 개방 최소화

* 관세 부분감축(평균 20%) 품목 :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팔, 기타 당, 전분용 토란, 타피오카, 귀리 등

□ **(민감품목)**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하여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비

○ 기타 한약재, 기타 과실견과(조제), 기타 과실(잼·제리)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20년 비선형 철폐 적용

* 기타 한약재(관세 8%)는 13년차부터 철폐, 기타 과실견과(관세 45%)·기타 과실(30%)은 11년차부터 철폐

□ **(일반품목)**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품목, 가축 사료원료 등 수입 의존 품목,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

나. 주요 농산물 양허결과

□ **(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

* 관세철폐 의무 이외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적용 배제

□ **(축산물)** 소·돼지·닭·오리 등 국내 주요 축종의 핵심 품목, 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은 모두 양허제외

○ 번식용 가축, 저율 관세품목(돼지비계 3%), 축산 가공품(알부민) 등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만 일부 개방

□ **(과실류)** 사과·배·포도·감귤·감·딸기·수박·복숭아 등 국내 주요 생산·소비 품목은 모두 양허제외

○ 감귤과 소비대체 효과가 큰 오렌지, 과실류 주요 가공품인 포도·사과·복숭아·딸기·토마토 주스도 양허제외

- 견과류도 국내 주요 생산품목인 밤·호두·잣·대추·은행 등은 양허 제외하고,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 간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만 개방

□ **(채소·특작류)** 고추·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 배추·당근·무·오이·가지 등 주요 밭작물, 인삼류 등은 양허제외

- 주요 채소류는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냉동·건조·조제저장·일시 저장 등 우회 수입 가능 세부품목도 모두 양허제외

- 인삼류는 고율관세(222.8%~754.3%) 세부품목은 모두 양허제외하고, 음료·차 등 저율관세(8%) 세부품목만 20년 철폐로 합의

-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참깨는 TRQ로 매년 24천톤을 수입하고, 들깨는 5년에 걸쳐 현행 관세(40%)를 36%로 부분 감축

□ **(가공식품)**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 대두유(식품용)·설탕·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양허제외

- 김치는 현행 관세(20%)를 10%(2%p) 이내*에서 부분 감축

* 평균 부분감축률은 20%이나, 배추·양념채소 및 김치업계에 미칠 영향 최소화를 위해 10% 이내에서 감축

- 우회 수입을 통해 양념채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혼합 조미료·기타 소스(일명 다대기)도 부분 감축폭을 최소화

- 전분류 중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구마 전분은 TRQ로 매년 고정물량으로 5천톤을 수입

< 한·중 FTA 우리측 농산물 양허결과 >

양허유형		세번수	비중(%)	주요 품목
즉시 철폐		216	13.4	소(육우/젖소/기타), 오리(기타/번식용), 돼지(번식용), 대두(종자/분/조분), 시탕수수당밀(주정제조용), 돈지(기타), 기금지(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토마토 종자, 양파(기타/탈지), 박류(밀), 양배추 종자, 겨자씨, 생모파(기타), 아자유 기타, 당밀(기타/주정제조용), 리드유, 무 종자, 아자유(조유), 채소종자(기타), 호밀(기타) 등
5년 철폐		209	13.0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우황, 파스타(기타), 옥수수박, 식혜, 사향, 사탕무, 건빵, 밀(기타), 면실유(조유/정제유/기타), 대두유(정제유/조유), 사탕수수, 스파게티, 양조식초, 라면 등
10년 철폐		164	10.2	꼬냇, 흰포도주(기타), 코코넛(기타/말린 것/미탈각-내과피), 베이커리제품(기타), 샤프란, 스위트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소나무(분재용), 붉은포도주(기타), 보드카, 마요네스, 아몬드(탈각) 등
소계		589	36.6	
15년 철폐		202	12.5	해바라기씨유(정제유), 팜핵유(정제유), 카레, 올리브(설탕저장처리/조제저장처리/일시저장처리), 아이스크림(기타), 쇼트닝, 사과주, 바나나(기타/플랜틴), 망고스틴(신선/건조), 마가린(액상제외), 두리언(신선), 구아버(신선/건조),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망고(신선/건조), 팜콘(조제저장처리), 커피 크림, 겨자(겨자의분/조분), 소시지(기타), 배합사료(축우/양돈/양계/어류/기타), 토마토페이스트,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냉동) 등
20년 철폐	11년차 부터 감축	2	0.1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기타과실(잼, 젤리, 마말레이드 기타)
	13년차 부터 감축	1	0.1	기타한약재(기타식물 - 향료, 의약품 등)
	20년 선형 철폐	236	14.6	도라지(신선/냉장), 매니옥(냉동), 데어리 스프레드, 소주, 맥주, 낙화생유(조유/정제유/기타/그 분획물), 인삼음료, 기타채소(설탕저장처리),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콩(기타/설탕저장처리), 유장(기타/사료용) 등
소계		441	27.4	
TRQ		7	0.4	참깨, 팥(건조/기타), 대두(기타/콩나물용),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 맥아(볶지 않은 것), 전분(고구마의 것), 대두(기타/기타)
부분 감축	20% 부분감축 (평균)	11	0.7	김치(조제저장처리), 혼합조미료, 기타소오스, 팥(탈각/조제저장처리), 당면, 고사리(건조), 들깨, 당류(기타), 낙화생 기타(조제저장처리), 송이버섯(냉동), 기타 채소(조제저장처리)
	130%로 감축	15	0.9	매니옥(신선/냉장/기타/건조), 매니옥칩(건조), 매니옥펠리트(건조), 밀(펠리트/분쇄물/조분), 스위트콘(기타/건조), 옥수수(종자용), 귀리(압착플레이크/분쇄물/조분/가공품), 암-디오스코레아종(기타), 토란-콜로카시아종(기타),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종(기타)
양허 제외		548	34.0	쌀, 보리(겉보리/쌀보리), 팜콘용 옥수수, 감자(식용/냉동·건조/칩용/감자분), 쇠고기(신선/냉장/냉동/식용설육), 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냉장기타/돼지족/밀폐가공품), 닭고기(냉동가슴/냉동날개/냉장육/닭고기가공품), 분유(탈지분유·연유/조제분유/혼합분유), 치즈(신선/가공/기타/체다), 버터, 꿀(천연/인조), 감귤류·오렌지(온주감귤/맨더린/탠저린/오렌지), 사과·배·포도, 키위, 호박, 고추(신선/냉장/건조/냉동), 마늘(신선/냉장/일시저장/건조/냉동), 양파(신선/냉장/건조/냉동), 인삼류(뿌리삼류, 기타 가공품) 등
소계		581	36.1	
총 합계		1,611	100.0	

중국측 양허

- **(초민감품목)** 기체결 FTA에서도 양허제외한 전통적 민감 품목인 쌀, 설탕, 밀가루, 식물성 유지, 담배 등 102개 품목을 양허제외
 - 나머지 1,029 품목(91%)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 최대 확보
- **(민감품목)**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신선 육류와 과채류 가공품, 파스타, 인스턴트 면 등은 20년내 관세를 철폐
 - 김치 등 조제저장 채소, 커피 조제품 등도 대부분 20년내 관세 철폐
- **(일반품목)** 냉동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신선 사과·배·포도 등 과실류 등은 10년내 관세를 철폐
 - 채소류는 신선·냉동을 불문하고 전 품목을 10년내 관세 철폐

< 한·중 FTA 중국 농산물 양허결과 >

양허유형		한·중 FTA		주요 품목
		세번수	%	
일반 품목	즉시	221	19.5	사료용 조제품, 잼·과실제리, 채소 종자 등
	5년	65	5.7	단백질계 물질, 양모, 수모, 생사, 가축원피, 냉동 오렌지 주스, 볶지 않은 커피
	10년	439	38.8	사과·배·포도·복숭아·딸기(신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냉동), 소시지, 볶은 커피, 물 등
소계		725	64.1	
민감 품목	15년	203	17.9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신선), 파스타, 과일주스, 채소주스, 천연꿀, 가공치즈 등
	20년	101	8.9	김치, 무알콜 음료, 기타 조미료, 인스턴트 면류, 커피 조제품, 곡분 조제품, 간장, 발효주, 냉동 오리고기 등
소계		304	26.9	
초민감 품목	부분감축	1	0.1	기타 조제식료품(20%→18.4%)
	양허제외	101	8.9	쌀, 설탕, 건조 인삼, 밤(미탈각), 식물성 유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류 등
소 계		102	9.0	
총합계		1,131	100.0	

2 동·식물 위생·검역(SPS)

- 농업계의 우려를 감안, WTO/SPS 협정 수준으로 최종 합의
 - 지역화 등의 검역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삭제하고 FTA상의 분쟁해결절차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
 - WTO/SPS 협정의 이행 및 양국 간의 SPS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SPS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3 비관세조치(NTM)

- 위생·검역(SPS) 및 무역기술장벽(TBT) 사안을 제외한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협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합의
 - 일방 당사국이 확인한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에 대하여 상품무역위원회 산하 작업반을 개최하여 협의기로 함

4 원산지

- 신선농산물(1~14류)은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설정, 가공식품(15~24류)은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
 - 낙농품, 화훼·채소류, 과일, 곡물·곡분 등은 국산 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 받도록 완전생산 기준 설정
 - 소시지, 초콜릿, 인스턴트 커피, 과채류 조제품 등은 수입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

Ⅲ. 국내 보완 대책

- 한·중 FTA는 그간 FTA를 일단락 짓고 우리 농업이 FTA 개방체계에 완전 편입되는 중요한 사안임
 - 한중 FTA 체결시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비중이 기존 64%(영연방 포함)에서 80%로 증가('13년 기준)
-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
 - 정부는 그동안 협상 진행과 병행하여 농업인, 지자체, 전문가 등과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음
 - 앞으로 최종 협상결과에 근거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경쟁력 강화 및 對중국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종합대책 주요 내용(안) >

- * (발작물 경쟁력 제고) 발기반정비, 발기계화, ICT융복합 등
- * (소비·수출기반 확대) GAP 확산, 농식품 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 * (농가소득안정) 발직불제 확대, 수입보장 보험도입 등
- * (인력, 정책금융)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정책금리 인하 등

-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과 T/F를 구성해 내실있는 대책 수립
- 아울러,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
 - 투융자 효과가 장기에 나타나는 사업은 FTA 발효 이전이라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IV. 향후 일정

□ 정식서명까지 후속 협정체결 절차 대응 철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 (legal scrub) ⇒ 가서명(initialing) ⇒ 번역작업 ⇒ 정식서명(signing)

□ 정식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에 국내 보완대책(안)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

영향분석 ⇒ 대책 초안마련 ⇒ 의견 수렴 및 협의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 국회비준 요청

○ (영향 분석) 상품분야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영향 분석 실시

- 산업별 영향분석 결과를 취합 · 검증 후 연구기관 합동 발표

○ (초안 마련) 그동안 검토해온 내용을 기초로 국내대책 초안 마련

- 농진청 · 산림청 · 지자체 등과 합동 TF 구성 · 운영

○ (의견 수렴) 농업인 · 지자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 농업인단체(전국단위, 품목별) 간담회, 국민공감위원회, 시도농정 국장회의 등을 통해 농업인, 지자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농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희망농업 포럼에서 대책 초안 논의
- 관계부처와 피해영향분석 확정 및 투융자 계획 협의

○ (법정 절차)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책안 상정 · 심의

○ (국회 제출) 비준동의안 및 국내대책 동시 제출

참고 1 한 · 중 교역현황

□ 對 중국 전체 교역 동향 : 2,288억불(628억불 흑자)

(단위 : 억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세계 교역액 (대세계 교역비중)
수 출	867	1,168	1,342	1,343	1,458	5,596 (26.1%)
수 입	542	716	864	808	830	5,156 (16.1%)
무역수지	325	453	478	535	628	
총교역액	1,409	1,884	2,206	2,151	2,288	

□ 對 중국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 57억불(38억불 적자)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A)	합 계	419	556	915	907	947
	농산물	327	447	816	654	675
	축산물	18	23	37	131	145
	임산물	74	86	62	122	127
수 입 (B)	합 계	2,822	3,227	3,999	4,214	4,714
	농산물	1,702	1,946	2,463	2,364	2,747
	축산물	42	53	60	138	142
	임산물	1,078	1,228	1,476	1,712	1,825
무역수지 (A-B)		△2,403	△2,671	△3,084	△3,307	△3,767

□ 對 중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주요 10개 품목('13)

(단위 : 백만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자당	128.7	화강암제품	540.8
2	조제분유	56.4	합판	288.4
3	커피조제품	52.1	쌀	284.4
4	혼합조제식료품	45.7	전분박	224.0
5	판지	44.5	혼합조제식료품	182.6
6	기타베이커리제품	44.4	기타임산물	136.7
7	비스킷	37.8	대두박	131.7
8	라면	37.8	김치	117.4
9	기타임산물	36.7	기타 가구	113.3
10	가죽	33.9	고추	111.8

참고 2

한·중/미/EU/호/캐 FTA 주요 농산물 양허 비교

품 목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한·호 FTA	한·캐 FTA
쌀	o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보리	o 겉보리(324%), 쌀보리(299.7%)	양허제외	15년+ASG+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TRQ
	o 맥아(269%), 맥주맥(513%)	TRQ/양허제외	15년+ASG+TRQ	15년+ASG+TRQ	15년+ASG+TRQ	12년+TRQ, 15년
옥수수	o 팝콘용 옥수수(630%)	양허제외	7년+ASG	13년	18년	10년
	o 종자용 옥수수(328%)	10년간 130%로 감축	5년	5년	18년	10년
대두	o 식용 대두(487%)	현행관세유지+TRQ	현행 관세 유지+TRQ	양허제외	현행 관세 유지+TRQ	현행 관세유지+TRQ (간장 및 대두박용은 즉시)
	o 기타(487%)	양허제외 (채유·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즉시철폐(채유,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5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10년간 50% 감축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감자	o 식용 감자(304%), 냉동건조(27%)	양허제외	현행 관세유지+TRQ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냉동, 건조, 종자용 10년)
	o 칩용 감자(304%)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8년)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15년)	계절관세(즉시/15년)
	o 감자분(304%)	양허제외	10년+ASG	13년	양허제외	10년+ASG+TRQ
전분	o 감자 전분(455%)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0년간 50% 감축	양허제외
	o 메이온 전분(455%), 고구마 전분(241.2%)	양허제외	15년+ASG	15년	18년/10년간 50% 감축	11년
	o 변형 전분(385.7%)	양허제외	12년+ASG+TRQ	12년+ASG+TRQ	15년	10년
쇠고기	o 신선냉장·냉동(40%)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5년+ASG	15년+ASG, 양허제외
	o 식용설육(18%)	양허제외	15년	15년	15년	11년
돼지고기	o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2014.1.1(냉동 목적은 2016.1.1)	10년	양허제외	13년+ASG
	o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양허제외	10년+ASG	10년+ASG	10년	13년+ASG
	o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양허제외	2014.1.1	6년	7년/5년	5년/6년
	o 냉동 기타(25%)	양허제외	2016.1.1	5년	5년	5년+ASG
닭고기	o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양허제외	12년	13년	18년	양허제외
	o 절단하지 않은 닭(18~20%)	양허제외	12년	12년	18년	11년
	o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양허제외	10년	10년	18년/10년	10년/양허제외
오리고기	o 냉장육(18%), 냉동육(18%)	양허제외	10년/12년	11년/14년	15년/18년	10년/양허제외
분유	o 전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o 탈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o 조제분유(36%)	양허제외	10년 + TRQ	10년 + TRQ	15년 + TRQ	양허제외
	o 혼합분유(36%)	양허제외	10년	10년	15년	양허제외
치즈	o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양허제외	15년 + TRQ	15년 + TRQ	20년/ 18년 + TRQ	양허제외
	o 체다치즈(36%)	양허제외	10년 + TRQ	10년 + TRQ	13년 + TRQ	양허제외
꿀	o 천연꿀(243%)	양허제외	현행 관세 유지+TRQ	현행 관세 유지+TRQ	양허제외	현행 관세유지+TRQ
	o 인조꿀(243%)	양허제외	10년	10년	양허제외	10년
사료	o 보조사료(50.6%)	20년	12년+TRQ	12년+TRQ	15년	10년+TRQ
	o 사료용 옥수수(328%)	양허제외	즉시철폐	5년	18년	10년
감귤류·오렌지	o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맨더린, 탠저린(144%)	양허제외	15년	15년	계절관세	11년
	o 오렌지(50%)	양허제외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양허제외
사과·배·포도	o 사과(45%)	양허제외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양허제외	후지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o 배(45%)	양허제외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양허제외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o 포도(45%)	양허제외	계절관세	계절관세	계절관세	양허제외
고추	o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고추(27%)	양허제외	15년	15년	양허제외	11년
마늘	o 신선 냉장 일사작 건조 마늘(30%)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 마늘(27%)	양허제외	15년	15년	18년	11년
양파	o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 양파(27%)	양허제외	12년	12년	15년	11년
인삼류	o 뿌리삼류 7개 세 번(2228~7543%)	양허제외	18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기타 인삼 가공품 등	양허제외	10년~15년+ASG	10년~15년+ASG	10~15년(차), 양허제외	10년~양허제외
면류	o 라면(5%), 파스타(5%)	5년/10년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10년	즉시철폐

가. 식량작물

품목	협상 결과
쌀	○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 : 양허 제외
콩	○ 식용 콩(487%, 콩나물용, 기타) : 현행관세유지 + TRQ 10,000톤 -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양허제외 - 사료용 : 양허제외
감자·감자분	○ 칩용감자(304%), 기타 식용(304%) : 양허제외 - 칩용 : 양허제외 - 종자용 감자(304%) : 양허제외 - 냉동·건조(27%) : 양허제외 ○ 감자분(304%) : 양허제외
보리	○ 겉보리(324%), 쌀보리(299.7%) : 양허제외 - 맥아(볶지 않은 것 269%) : 현행관세유지 + TRQ 5,000톤 - 맥주맥(513%) : 양허제외 - 보리 기타(299.7%) : 양허제외
옥수수	○ 팝콘용(630%), 사료용(328%) : 양허제외 - 종자용(328%) : 130%까지 감축(10년 균등) - 옥수수 기타(328%) : 양허제외
전분	○ 감자전분(455%), 옥수수전분(226%), 기타전분(800.3%) : 양허제외 - 밀전분(50.9%), 매니옥전분(455%) : 양허제외 - 고구마전분(241.2%) : 현행관세유지 + TRQ 5,000톤
기타	○ 고구마(385%, 냉동은 45%), 기타 서류(385%) : 양허제외 - 발효주정(270%) : 양허제외 - 팔 종자용(420.8%) : 양허제외 - 팔 기타(420.8%) : 현행관세유지 + TRQ 3,000톤 - 메밀(256.1%) : 양허제외 - 울무(800.3%)·기타가공곡물(800.3%) : 양허제외

나. 육 류

품목	협상 결과
쇠고기	○ 민감한 8개 세번(40%) : 양허제외 ○ 식용설육(족·꼬리·혀 등, 18%), 육과 식용설육(27%) : 양허제외
돼지고기	○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어깨살, 삼겹살, 기타(냉장/냉동, 22.5/25%) : 양허제외 ○ 식용설육(18%) : 양허제외 ○ 돼지고기 가공품(27~30%) : 양허제외 ○ 소시지(18%) : 양허제외 - 소시지 기타(30%) : 15년 철폐
닭고기	○ 닭 다리·가슴·날개(냉장/냉동, 18/20%) : 양허제외 ○ 통닭(18~20%) : 양허제외, 기타 미절단 냉장닭고기(18%) : 양허제외 ○ 닭고기 가공품(30%) : 양허제외 ○ 삼계탕(30%) : 양허제외
계란	○ 계란(41.6), 난황(27%) : 양허제외 ○ 종란(27%) : 양허제외 ○ 조란기타(27%) : 양허제외
기타 육류	○ 오리고기(18~27%) : 양허제외 ○ 산양·면양고기(22.5%) : 양허제외 ○ 칠면조고기(18~27%) : 20년 철폐 ○ 녹용 전지(20%) : 양허제외 ○ 녹용 기타(20%) : 양허제외

다. 낙농품, 꿀, 사료

품목	협상 결과
분유 연유 유당	○ 탈지분유·전지분유(176%)·연유(89%) : 양허제외 ○ 혼합분유(36%) : 양허제외 ○ 조제분유(36~40%) : 양허제외 ○ 유당(49.5%) : 양허제외
치즈	○ 치즈(36%) : 양허제외
밀크와 크림	○ 밀크와 크림(36%) : 양허제외 - 지방함량 6% 이하 : 양허제외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양허제외 -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 양허제외
버터	○ 버터(89%) : 양허제외
유장	○ 식용 유장(49.5%) : 양허제외 ○ 사료용(49.5%) : 20년 철폐
꿀	○ 천연꿀, 인조꿀(243%) : 양허제외 ○ 로얄제리(8%) : 양허제외 ○ 로얄제리·벌꿀조제품(8%) : 양허제외
사료	○ 사료용 근채류(100.5%) : 양허제외 ○ 보조사료(50.6), 배합사료(대용유, 71%) : 20년 철폐 ○ 배합사료(양돈/양계/어류/축우용/기타 4.2~5%) : 15년 철폐 ○ 기타사료(46.4%) : 현행관세유지 + TRQ 38,000톤

라. 과일·과채류

품목	협상 결과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	○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45%) : 양허제외
감귤류	○ 감귤, 감귤류(144%) : 양허제외 ○ 맨더린(144%) : 양허제외
오렌지	○ 오렌지(50%) : 양허제외
키위	○ 키위(45%) : 양허제외
멜론	○ 멜론(45%) : 양허제외
기타 딸기 (45%)	○ 나무딸기(신선 45%, 냉동 30%) : 양허제외 ○ 초본류딸기(일시저장처리, 30%) : 양허제외 ○ 딸기(조제저장처리, 45%) : 양허제외 ○ 딸기 주스(50%) : 양허제외
토마토	○ 토마토(신선·냉장, 45%) : 양허제외 ○ 토마토 주스(30%) :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30%) : 20년 철폐 ○ 토마토 케첩(8%), 토마토 소스(45%) : 20년 철폐 - 토마토 페이스트(5%) : 15년 철폐
오이, 호박	○ 오이(27%) : 양허제외 ○ 호박(27%) : 양허제외
가지	○ 가지(27%) : 양허제외

마. 양념채소, 인삼, 특작

품목	협상 결과
고추	○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270%), 냉동고추(27%) : 양허제외
마늘	○ 통마늘 · 깎마늘 · 건조마늘 · 일시저장처리(360%) : 양허제외 ○ 냉동마늘(27%) :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30%) : 양허제외
양파	○ 신선 및 건조 양파(135%) : 양허제외 ○ 냉동 양파(27%) :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30%) : 양허제외
생강	○ 신선·건조 · 기타 생강(377.3%) : 양허제외 ○ 설탕저장처리(30%) : 양허제외
파	○ 건조 파(30%), 쪽파(27%) :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 쪽파(30%) : 양허제외
인삼	○ 인삼류 23개 주요품목 - 수삼(222.8%) 및 홍삼(754.3%) · 백삼(222.8%) 등 뿌리삼류 : 양허제외 - 홍삼분(754.3%) · 백삼분(18%) : 양허제외 - 홍삼엑스 · 홍삼엑스분(754.3%), 백삼엑스 · 백삼엑스분(20%) : 양허제외 - 홍삼타블렛(754.3%) · 백삼타블렛(18%) : 양허제외 - 인삼잎 · 줄기, 인삼종자, 홍삼차(754.3%) : 양허제외 ○ 인삼차(8%) : 20년 철폐 ○ 인삼음료(8%) : 20년 철폐 - 추출한 올레오레진(백삼·기타인삼 20%, 홍삼 754.3%) : 양허제외
참깨, 참기름, 땅콩, 들깨, 들기름	○ 참깨(630%) : 현행 관세유지 + TRQ (24,000톤) - 들깨(40%)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 참기름(630%), 들기름(36%) : 양허제외 ○ 땅콩(230.5%) :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63.9%)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 피넛버터(50%) : 20년 철폐

바. 엽근채류

품목	협상 결과
당근	○ 신선 당근(30%), 냉동(27%), 건조(30%) : 양허제외
무	○ 신선 무(30%), 건조(30%) : 양허제외 ○ 신선 순무(27%) : 양허제외
배추	○ 배추 신선, 기타(27%) : 양허제외
양배추	○ 양배추 신선(27%), 양배추 건조(30%) : 양허제외
기타	○ 연뿌리(설탕저장처리, 30%), 토란줄기(30%) : 20년 철폐 ○ 고구마줄기(30%) : 양허제외
기타채소	○ 더덕(신선 27%, 건조 30%), 건조한 도라지(8%) : 양허제외 - 도라지 신선/냉장(27%) : 20년 철폐 ○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냉동 30%, 설탕저장처리 15%) : 15년 철폐 - 스위트콘(기타/건조 370%) : 130%까지 감축(10년 균등) - 스위트콘(종자용 370%) : 양허제외
기타채소 혼합물, 균질화한 채소	○ 채소류의 혼합물(건조/냉동 27%) : 양허제외 - 채소류의 혼합물(27%) : 20년 철폐 ○ 기타채소(냉동/일시저장처리 27%, 건조 30%) : 양허제외 - 기타채소(조제저장처리 20%)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 균질화한 채소(유아용 퓨레콘, 20%) : 20년 철폐

사. 가공식품

품목	협상 결과
김치	○ 김치(20%) : 기존 관세의 1% 감축(1년)
설탕	○ 기타당류(8%)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대두유, 옥수수유	○ 식품용 대두유(5%) : 양허제외 - 바이오디젤용 대두유(5%) : 5년 - 대두유와 그 분획물(8%) : 10년 철폐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8%) : 양허제외 - 옥수수유 기타/조유(5%) : 5년 철폐
혼합조미료 및 소스	○ 혼합조미료(45%), 기타소오스(45%) : 기존 관세의 1% 감축(1년)
장류	○ 된장(8%), 간장(8%), 고추장(45%), 기타 장류(45%) : 양허제외 ○ 춘장(8%) : 20년 철폐
과자류, 빵류, 기타 식품류	○ 초코렛류(8%) : 5년 철폐 ○ 귀리빵, 파이와 케이크 등 빵류(8%), 건빵(8%) : 5년 철폐 ○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5%), 베이커리제품기타(8%) : 10년 철폐 - 미과(8%) : 15년 철폐 ○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미제거(2%)) : 10년 철폐 -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제거(2%)), 커피의 각과 피 : 즉시철폐 - 볶은 커피(8%) : 5년 철폐 - 커피크리머(8%) : 15년 철폐 ○ 라면(5%) : 5년 철폐 ○ 포도주(15%) : 10년 철폐 - 기타 포도즙(30%) : 양허제외 ○ 소주(30%) : 20년 철폐

참고 4

한 · 중 FTA TRQ 품목 및 물량

(단위 : 톤, %)

품명	기준관세 (in-quota)	대세계 수입량	대중국 수입량		한·중 FTA	
			총 수입량(A)	WTO TRQ 수입량	TRQ 물량	총 수입량(A) 대비 비중(%)
대두(기타, 콩나물용)	487(5)	318,836	118,018	116,131	10,000	8.5
참깨	630(40)	73,401	29,685	27,987	24,000	80.8
고구마전분	241.2(11)	29,218	27,794	27,794	5,000	18.0
팥(건조/기타)	420.8(30)	24,984	24,984	24,654	3,000	12.0
기타사료 (식물성 부산물)	46.4(5)	109,703	91,926	91,750	38,000	41.3
맥아	269(30)	199,739	13,481	13,481	5,000	37.1

< 개 요 >

□ 의견 수렴 실적 : 총 182회 진행('12.1월~'14.10월)

○ 품목별 전문가회의(36회), 장차관 현장 활동(15회), 토론·설명회 등(131회)

□ 향후 의견수렴 활동 지속 추진 계획

* 대중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협의회, 농업통상전문가 포럼, 협상동향 설명회·지역포럼·간담회 등 매월 또는 수시 개최

< 세부 활동현황 >

□ 『품목별 전문가 회의』 : 총 36회

○ 주요 품목별로 의견 수렴, 이해도 제고 및 협상전략 방안모색

○ 총 74개 주요 품목 대상 전문가회의 개최

* 마늘양파('12.1.17), 사과배('12.1.14), 무배추('12.2.22), 가금('12.4.3), 낙농('12.4.10), 가공식품·식량('12.6.19), 축산·유통('12.6.20) 등

□ 현장방문·특강 등을 통한 장·차관 현장 의견수렴 : 총 15회

(장관) 한농연 간담회('12.2.16), 농업현장 방문('12.2.18 예산), 쌀전업농회장단 면담('12.2.23), 인삼생산자 협회 간담회('12.3.8), 농협 임직원 특강('12.3.10), 딸기 수출농가 방문('12.3.10), 축산계 간담회('12.3.12) 등

(차관) 농업현장 간담회('12.2.14), 농업현장 방문('12.3.6, 공주), 농업분야 FTA 이행센터 개소식('12.3.8) 등

□ 『농업통상 전문가 포럼』 : 총 14회('12.2.22, 3.16, 4.25, 8.27, 9.26, 11.12, 12.21, '13.7.10, 9.13, 10.25, 11.25, 12.12, '14.3.21, 4.4)

□ 『한중 FTA 지문단 회의』 : 총 12회('12.6.15, 8.17, 10.26, '13.4.23, 6.25, 8.26, 11.13, 12.19, '14.3.12, 5.14, 7.4, 9.19)

□ 『한중 FTA 농업분야 토론회』 : 총 8회('12.2.29, 6.25, 7.25, 8.14, 9.24, 10.15, 10.17, '14.10.31)

□ 『협상동향 설명회』, 『농업협상 지역포럼』 등 : 총 97회

* 협상동향 설명회 : 10회('12.2.17, 3.30, 7.19, 11.23, '13.7.22, 8.26, 8.29, 8.30, 10.11, 12.18), 전문지 및 기자 간담회 : 4회('12.2.28, 7.16, 7.17, '13.9.6), 농업통상 관련 간담회 : 15회('12.4.6~10, '13.6.10, 7.8, 7.11, 9.6, 11.18, 11.26, 12.6, 1.10, 2.27, 3.6), 농업협상 지역포럼 : 18회('12.9.6, 9.20, 9.21, 9.26, 9.27, 10.16, 10.26, 11.7, '13.7.18, 7.24, 10.8, 10.16, 10.17, 10.24, 11.20, 11.21, 12.3, '14.6.16), 희망농정포럼 : 4회('13.10.2, '14.1.17, 3.17, 6.5), 협상 관련 세미나, 국회 등 설명·홍보 : 43회('12.1.18, 1.20, 2.23, 3.7, 3.8, 3.28, 4.6, 9.10, 9.27, 10.16, '13.6.20, 6.27, 7.8, 8.14, 8.16, 8.27, 8.29, 10.2, 11.1, 11.13, 11.14, 11.15, 12.2, 12.5, 12.10, 12.20, '14.1.21, 1.24, 3.5, 3.20, 5.8, 6.12, 6.17, 6.20, 6.21, 6.25, 6.26, 6.27, 7.9, 7.22~25, 9.26, 10.6, 10.16, 10.28, 10.29)

가. 추진경과

□ '09.3월 한·호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7차례 공식협상 개최

○ 수출시장 확대, 호주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추진

* 제1차 협상('09.5월, 호주), 제2차 협상('09.8월, 서울), 제3차 협상('09.11월, 호주), 제4차 협상('10.3, 서울), 제5차 협상('10.5월, 호주), 제6차 협상('13.11월, 서울), 제7차 협상('13.12월, 발리)

□ 쇠고기·낙농품 양허수준 및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 차로 '10.5월 이후, 공식 협상 잠정 중단

□ '13.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13.10.9)에서 양국은 한·호주 FTA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데 합의

○ '13.9.7, 호주 총선 이후 정권 교체로 호주측이 ISD 수용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협상이 급진전

□ '13.11.15, 한·호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호 FTA 제6차 공식협상 개최

○ 한·호 FTA상 ISD 조항 반영 및 상품 양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국간 의견 접근

□ '13.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13.12.3, 인도네시아 발리) 계기, 제7차 한·호주 FTA 공식협상 개최

○ '13.12.4,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한·호주 FTA 실질 타결

□ '14.4.8, 통상장관간 한·호주 FTA협정에 정식서명 후, 국회에 비준 동의안 제출('14.9.16)

나. 협상 주요결과

(1) 농산물 양허 개요

□ 양허제외, TRQ, 장기 관세철폐 등 예외적 취급이 농산물 전체 품목 중 38.5%(품목수 기준, 579개)로 한·미/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 타결

* 10년 초과 관세철폐 및 예외취급 비율(품목수 기준) : 한·미 FTA 12.3%, 한·EU FTA 14.7%

* 호주측은 모든 농산물(806개 세번)의 관세를 즉시 철폐기로 합의

□ 쌀, 분유, 돼지고기(냉동 삼겹살)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8개(농산물 품목수 기준 10.5%)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 양허제외 비율(품목수 기준) : 한·미 FTA 1.0%(16개), 한·EU FTA 2.9%(42개)

□ 그 이외,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부분감축 및 농업 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

* TRQ(7개 품목, 19개 세번) : 설탕, 치즈, 대두, 버터, 사료용 근채류, 맥주맥/맥아

* ASG(5개 품목, 12개 세번) : 쇠고기, 옥수수(기타), 맥주맥/맥아 및 정제설탕

* 계절관세(5개 품목, 5개 세번) : 오렌지, 포도, 키위, 맨더린, 칩용 감자

* 부분감축(12개 품목, 12개 세번) : 녹두, 전분, 대두, 사료용 근채류 등

□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등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즉시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 차별화(농산물 품목수 기준 61.5%)

* 즉시~10년철폐 비율(품목수 기준) : 한·미 FTA 87.7%, 한·EU FTA 85.3%

< 한·호주 FTA 양허유형별 농산물 양허 >

(단위 : 개, 천불)

양허유형		한·호주 FTA				한·미 FTA		한·EU FTA	
		세번수	%	對호주 수입액*	%	세번수	%	세번수	%
일반 철폐	즉시철폐	254	16.9	807,964	47.0	578	37.8	613	41.8
	2~5년철폐	287	19.0	42,973	2.5	356	23.3	303	20.7
	6~10년철폐	385	25.6	65,097	3.8	408	26.6	335	22.9
	소계	926	61.5	916,034	53.2	1,342	87.7	1,251	85.3
장기 철폐	12년철폐	7	0.5	3,134	0.2	40	2.6	24	1.6
	13년철폐	3	0.2	3,954	0.2	0	0.0	27	1.8
	15년철폐	307	20.4	745,994	43.4	108	7.1	98	6.7
	16년철폐	-	-	-	-	2	0.1	1	0.1
	17년철폐	3	0.2	-	-	-	-	-	-
	18년철폐	75	5.0	19,982	0.0	7	0.5	7	0.5
	20년철폐	7	0.5	4,063	0.2	-	-	2	0.1
예외 취급	10년간 50%감축	12	0.8	12	0.0	-	-	-	-
	계절관세	5	0.3	3,341	0.2	1	0.1	2	0.1
	TRQ	19	0.1	323	6.8	15	1.0	12	0.8
	협정대상양허제외	158	10.5	23,820	1.4	16	1.0	42	2.9
소계		579	38.5	804,623	46.8	189	12.3	215	14.7
총합계		1,505	100	1,720,657	100	1,531	100	1,466	100

* '07~'09 對호주 평균 수입액

(2) 주요 농산물 양허결과

□ (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면제

□ (쇠고기) 호주의 주요 관심품목인 쇠고기(40%)에 대해 장기
철폐기간(15년 철폐)을 확보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등 주요 세번
(8개)에 대해서는 ASG 설정

* ASG 초기물량 : '09~'11년 평균 수입량의 110%, 증량률 : 복리 2%

- (돼지고기·닭고기) 냉동 삼겹살·어깨살·넓적다리살(25%)은 양허제외, 나머지 부위는 5~15년 철폐, 냉동 닭다리(20%)는 양허제외하되, 나머지 부위(18~30%)는 10~18년 철폐
- (낙농품) 원유 수급 조절에 중요 품목인 탈·전지분유와 연유는 양허제외
 - 치즈(36%), 버터(89%) 등 민감 낙농품에 대해서 12년 이상의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하면서, 대호주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TRQ 부여
- (과실류) 사과(45%), 수박(45%), 감귤(144%) 등은 양허제외하였으며, 오렌지(50%), 포도(45%), 키위(45%)에 대해 계절관세를 부여
 - 오렌지는 비성수기(4월~9월)에는 7년 철폐, 성수기(10월~3월)에는 TRQ(20톤)를 제공하면서 현행관세 유지
 - 포도는 비성수기(12월~4월)에는 5년 철폐, 성수기(5월~11월)에는 현행관세 유지
- (곡류) 쌀·겉보리 등은 양허제외하고, 대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면서 TRQ 제공, 맥주맥·맥아는 15년 장기철폐하되 TRQ 제공
- (양념채소 및 특작) 고추, 마늘(신선·냉장·건조), 양파(신선·냉장·건조), 인삼류(수삼·홍삼·백삼) 및 참깨 등은 양허제외
 - 마늘(냉동), 양파(냉동) 및 땅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3) 기타 협정문

- (ASG) 쇠고기, 옥수수, 맥주맥/맥아, 정제설탕의 대호주 수입물량이 사전에 합의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추가 부과

* ASG 초기물량 : '09~'11년 평균 수입량의 110%, 증량률 복리 2%

□ (TRQ 관리) 한·미/EU FTA보다 간결하게 규정하여 운영의 자율성 확보

○ TRQ 운영 관련 협의시, 양국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함

□ (SPS) WTO 회원국으로서 WTO/SPS 협정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 SPS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이해증진을 위해 연락처 (Contact point) 지정 및 기술협의회(Technical meeting) 설치

□ (원산지)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제3국산 우회수입 방지(도축 불인정 등)

○ 가공 농산물은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 (식량안보) 협력위원회 설치 등 식량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 특히, 해외농업투자로 생산된 식량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관련, 사전 협의 의무화, 사후 조기 복구책 마련을 위한 협의 규정

다. 영향 분석 결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호주 FTA 농업분야 총 피해액은 15년간 16,523억원(연평균 1,102억원)으로, 한·미 FTA의 13.5%, 한·EU FTA의 76.1% 수준

* 총 피해규모 : (한·미 FTA) 122,253억원, (한·EU FTA) 21,719억원

□ 축산 분야 피해액은 13,479억원으로 총 피해액의 81.6% 수준이며, 보리, 감자 등 재배업 피해액은 3,044억원 발생 예상

○ 한육우 생산감소액은 15년간 총 9,454억원(연평균 630억원) 예상

라. 향후 일정

□ 국회 비준동의 관련 대응, 협상결과 및 대책 설명 등 추진

참고 1 한·호주 교역현황

□ 對 호주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5,243	6,642	8,164	9,269	9,564
수 입	14,756	20,456	26,316	22,978	20,768
무역수지	-9,513	-13,814	-18,152	-13,709	-11,204
총교역액	19,999	27,098	34,480	32,247	30,332

□ 對 호주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천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A)	합 계	78,763	74,741	80,996	94,005	97,753
	농산물	71,971	69,416	76,287	85,833	86,941
	축산물	5,819	4,022	3,582	5,389	7,555
	임산물	973	1,303	1,127	2,783	3,257
수입(B)	합 계	1,600,776	2,094,262	2,709,107	2,784,845	2,448,934
	농산물	930,718	1,256,982	1,597,681	1,811,051	1,313,973
	축산물	608,960	789,413	1,058,319	936,302	995,808
	임산물	61,098	47,867	53,107	37,492	38,276
무역수지(A-B)		-1,522,013	-2,019,521	-2,628,111	-2,690,840	-2,351,181

□ 對 호주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3)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라면	쇠고기
2	커피조제품	사탕수수당
3	기타베이커리제품	밀
4	귤련	면
5	기타음료	소금
6	혼합조제식료품	보리
7	김	사료용근채류
8	비스킷	면실
9	맥주	유채유
10	젤라틴	루핀종자

참고 2 한·호주 FTA 농산물 양허결과(우리측 양허)

(단위 : 천불)

양허유형	세번수	비율	수입액 (’07-’09)	비율	주요 품목
즉철	254	16.9	807,964	47.0	산동물(돼지, 닭, 산양), 버찌(신선), 아몬드(탈각), 밀(제분용), 메슬린 가루, 아자유, 당밀(기타), 포도주 등
3년	106	7.0	8,881	0.5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국화, 아자유, 당밀(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 마요네스, 생모피, 기타빙과류, 커피의각, 데어리스프레드 등
5년	181	12.0	34,092	2.0	배추·완두·당근(신선), 옥수수가루, 소시지, 사탕수수당밀(기타), 유자(조제), 오렌지주스(기타), 포도주스(기타), 유장(사료용), 밀크알부민 등
7년	122	8.2	3,412	0.2	돼지식용설육, 토마토, 양배추·완두·살구(신선), 대두유, 면실유, 혼합주스, 맥주, 아이스크림 등
7년+ASG	1	0.1	6,579	0.4	옥수수 기타
10년	262	17.4	55,106	3.2	면양(신냉, 냉동), 강낭콩, 렌즈콩, 은행(탈각), 망고(신선), 전분(밀), 올리브유, 유채유, 사탕수수당밀(주정용), 돼지고기(냉장), 면양(3)(냉장/냉동-빠있는 것, 없는 것) 등
소계	926	61.5	916,034	53.2	
12년	7	0.5	3,134	0.2	버터기제조제품, 커피크림 제조용의 것, 카세인글루 등
13년	1	0.1	3,954	0.2	냉동크림
15년	292	19.4	89,800	5.2	소식용설육(신선/냉장, 즉/냉동, 기타/냉동), 장(소의 것), 돼지고기(냉동), 톨립 절화, 아바카도, 호박, 감자, 잭탈각, 매니옥칩(건조), 인삼엑스, 추출올레오레 오진(인삼), 유장(기타), 변성유장, 유장분말(기타), 유장기타(혼합분유) 등
15(5)	1	0.1	1,184	0.1	혼합양념
17년	3	0.2	-	-	냉동크림(기타), 조제분유(기타) 등
18년	70	4.7	240	0.0	닭고기(냉동/냉장), 영지버섯, 멜론(신선), 레몬, 마늘(냉동), 당근(건조), 옥수수(팝콘용), 밤(냉동), 전분(매니옥) 등
20년	2	0.1	5	0.0	밀크와 크림
ASG	15	8	577,879	33.6	쇠고기(냉장/빠없는 것, 냉동/빠없는 것, 냉동/갈비/빠채절단, 냉동/기타/빠채절단 등), 쇠고기(냉장/도체와이분도체, 냉장/갈비/빠채절단, 냉장/기타/빠채절단 등)
	18	1	107	0.0	정제설탕(기타)
TRQ	13	2	15,323	0.9	조제분유, 체더치즈
	15	6	77,131	4.5	버터, 버터(기타), 조제분유(기타), 맥주맥, 맥아(북지않은 것)(ASG), 사료용근채류(기타)
	18	4	19,635	1.1	치즈(모차렐라, 크림, 가공 등)
	20	5	4,058	0.2	치즈(가우더, 카망베르, 에멘탈, 기타 등)
	양허 제외	2	323	0.0	대두(콩나물용), 대두(기타)
10년간 50% 감축	12	0.8	12	0.0	녹두, 맥아(혼연), 전분(옥수수·감자·고구마), 대두, 사료용근채류, 대두, 이눌린 등
계절관세	5	0.3	3,341	0.2	오렌지, 포도, 감자, 키위, 맨더린
양허제외	158	10.5	23,820	1.4	쌀, 탈전지분유, 연유, 돼지고기(냉동), 천연꿀, 양파(신냉), 녹용, 쪽파(신냉), 고추, 마늘, 파, 수박, 사과, 감귤, 겔보리, 쌀보리, 참깨, 낙화생, 인삼 등
소계	579	38.5	804,623	46.8	
총합계	1,505	100	1,720,657	100	

참고 3 주요 품목별 양허협상 결과 비교

품목		한·호 FTA		한·미 FTA		한·EU FTA	
쌀	o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쇠고기	o 신선냉장·냉동(40%)	15년+ASG(154,584/203,970톤)		15년+ASG(270,000/354,000톤)		15년+ASG(9,900/13,063톤)	
	o 식용설육(18%)	15년		15년		15년	
돼지고기	o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2014.1.1(냉동 목살은 2016.1.1)		10년	
	o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10년		10년+ASG(8,250/13,938톤)		10년+ASG(163/195톤)	
	o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7년/5년		2014.1.1		6년	
닭고기	o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18년		12년		13년	
	o 절단하지 않은 닭(18~20%)	18년		12년		12년	
	o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10년		10년		10년	
분유	o 전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5,000톤/영구증량, 복리3%)		현행관세유지 + TRQ(1,000톤/1,512톤)	
	o 탈지분유(176%)	양허제외					
	o 조제분유(36%)	15년 + TRQ(470/584톤,복리3%)		10년 + TRQ(700/887톤,복리3%)		10년 + TRQ(450/570톤)	
	o 혼합분유(36%)	15년		10년		10년	
치즈	o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18~20년	TRQ(4,630/6,409톤,복리3%)	15년	TRQ(7,000/10,280톤, 복리3%)	15년	TRQ(4,560/6,696톤)
	o 체다치즈(36%)	13년		10년		10년	
꿀	o 천연꿀(243%)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200톤,영구증량		현행 관세유지+TRQ(50톤/75톤)	
	o 인조꿀(243%)	양허제외		10년		10년	
사료	o 보조사료(50.6%)	15년		12년+TRQ(5,500/7,392톤, 복리3%)		12년+TRQ(5,500/7,391톤)	
	o 사료용 옥수수(328%)	18년		즉시철폐		5년	
감귤류·오렌지	o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15년		현행 관세유지	
	o 맨더린, 탠저린(144%)	계절관세(18(4~9월),E(10~3월))		15년		15년	
	o 오렌지(50%)	계절관세(7(4~9월),E(10~3월))+TRQ(20/30톤)		계절관세(E(9~2월),7(3~8월) +TRQ(2,500/영구증량)		계절관세(E(9~2월),7(3~8월) +TRQ(20/60톤)	
사과·배·포도	o 사과(45%)	양허제외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 +ASG(9,000/20,429톤)		후지산 20년(기타품종10년) +ASG(7,500/11,594톤)	
	o 배(45%)	양허제외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o 포도(45%)	계절관세(5(10~4월),E(5~11월))		계절관세(17(5~10.15),5(10.15~4월))		계절관세(17(5~10.15),5(10.15~4월))	
고추	o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15년+ASG(827/13,938톤)		현행관세유지	
	o 냉동고추(27%)	양허제외		15년		15년	
마늘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15년+ASG(1,148/2,297톤)		현행관세유지	
	o 냉동마늘(27%)	18년		15년		15년	
양파	o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15년+ASG(2,904/5,808톤)		현행 관세유지	
	o 냉동 양파(27%)	15년		12년		12년	
설탕	o 원당(3%)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o 백설탕(35%)	18년+ASG(946/1,325톤)		16년+ASG(833/1,461톤)		16년+ASG(220/308톤)	
	o 착색·착향된 설탕(35%)	양허제외		16년		현행관세유지	
인삼류	o 수삼, 홍삼, 백삼 등 뿌리삼류 7개 세번(222.8~754.3%)	양허제외		18년+ASG(62/103톤)		현행관세유지	
	o 기타 인삼 가공품 등	10~15년(차), 양허제외		10년~15년+ASG(62/103톤)		10년~15년+ASG(300/420톤)	
주류	o 포도주(15%)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o 맥주(30%)	7년		7년		7년	
	o 스카치 위스키(20%)	15년		5년		3년	
	o 보드카(20%)	10년		5년		5년	
차류	o 커피(생두)(2%)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o 홍차(40%)	18년		5년		즉시철폐	
	o 녹차(513.6%)	양허제외		15년+ASG(8.3/6.6톤)		18년	

가. 추진경과

- '05.7월 협상개시 이후 '08.3월까지 총 13차례 공식협상 개최
 -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WTO 제소('09.4월) 등으로 협상 중단
 - '12년 이후 비공식회의를 통해 협상 재개 방안 협의
- '13.11월 한·캐나다 FTA 제14차 공식협상 개최(11.25~29, 서울)
 - 총 24개 챕터 중 상품 시장접근 챕터를 제외한 23개 챕터 협상 타결
- '14.2월 회기간회의를 통한 주요 잔여쟁점 처리방안 합의
- '14.3.11일 한·캐 통상장관 회담 및 정상회담에서 실질 타결
- '14.9.22 한·캐 FTA 정식 서명 후 '14.10.1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나. 협상 주요결과

(1) 농산물 양허 개요

- 양허제외 및 예외적 취급(TRQ/ASG/세번분리/10년초과 장기철폐)이 전체 농산물(품목수 기준, 1,500개) 중 **18.8%**(282개)로 한·미(12.3%)/한·EU(14.7%)에 비해 보수적
 - 쌀, 분유, 치즈, 감귤, 사과(후지), 배(동양배), 고추·마늘·양파(냉동제외), 인삼 등 주요 민감농산물 **211개**(품목수 기준 14.1%) 품목은 양허제외
 - * 양허제외(품목수 기준) : 한·미 1.0%(16개), 한·EU 2.9%(42개)
 - 그 외, 저율관세할당(TRQ)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등 예외적 수단 확보
 - * TRQ(7개 품목, 11개 세번) : 천연꿀, 맥아, 대두, 보리, 감자분, 사료용 근채류, 보조사료
 - * ASG(7개 품목, 20개 세번)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

□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등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즉시에서 10년 철폐(품목수 기준 81.2%)

* 즉시~10년철폐 비율(품목수 기준) : 한·미 FTA 87.7%, 한·EU FTA 85.3%

< 한·캐나다 FTA 양허유형별 농산물 양허 >

(단위 : 개, 천불)

양허유형		한·캐나다FTA				한·미FTA		한·EUFTA	
		세번수	비중(%)	對캐 수입액('09-'11)	비중(%)	세번수	비중(%)	세번수	비중(%)
일반 철폐	즉시철폐	406	(27.1)	350,050	(53.7)	578	37.8	613	41.8
	2~5년철폐	387	(25.8)	143,431	(22.0)	356	23.3	303	20.7
	6~10년철폐*	425	(28.3)	82,258	(12.6)	408	26.6	335	22.9
소계		1,218	(81.2)	575,738	(88.4)	1,342	87.7	1,251	85.3
장기 철폐	11년철폐	42	(2.8)	2,019	(0.3)	-	-	-	-
	12년철폐	-	-	-	-	40	2.6	24	1.6
	13년철폐	3	(0.2)	35,017	(5.4)	-	-	27	1.8
	15년철폐	14	(0.9)	27	(0.0)	108	7.1	98	6.7
	16년철폐	-	-	-	-	2	0.1	1	0.1
	18년철폐	1	(0.1)	0	(0.0)	7	0.5	7	0.5
	20년철폐	-	-	-	-	-	-	2	0.1
예외 취급	계절관세	1	(0.1)	0	(0.0)	1	0.1	2	0.1
	TRQ	6	(0.4)	16,099	(2.5)	15	1	12	0.8
	기타**	4	(0.3)	272	(0.0)	-	-	-	-
	양허제외	211	(14.1)	22,094	(3.4)	16	1	42	2.9
소계		282	(18.8)	75,528	(11.6)	189	12.3	215	14.7
총합계		1,500	(100)	651,266	(100)	1,531	100.0	1,466	100.0

* 감자분, 사료용 근채류, 보조사료 등의 TRQ 품목 5개 포함

** 세번분리 : 5년+양허제외(2개), 10년+양허제외(2개)

(2) 주요 농산물 양허결과

□ (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면제

□ (쇠고기) 쇠고기 관세(40%)에 대해 15년 장기철폐 확보

○ 도체와 이분도체(신선·냉장), 갈비(신선·냉장 및 냉동) 등 주요 세번(9개)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설정

□ (돼지고기) 돼지고기(22.5~25%) 삼겹살(냉장·냉동)과 기타 부위(냉장)는 13년 장기 철폐, 기타 부위(냉동)는 5년 철폐로 한·미/한·EU에 비해 3~5년 정도 더 장기로 관세 철폐

○ 돼지고기 삼겹살과 기타 부위(4개 세번)에 대해서는 ASG 설정

□ (낙농품) 분유(36~176%), 치즈(36%), 버터(89%) 등은 양허제외, 천연꿀(243%)은 양허제외에 TRQ 제공

□ (닭고기·오리고기) 닭고기(18~30%)는 양허제외(냉동 닭다리·가슴·날개) 및 10~11년 철폐(냉장 닭다리·가슴·날개, 통닭), 오리고기(18~27%) 냉장은 10년 철폐, 냉동은 양허제외

□ (과실류) 후지사과·동양배·포도(45%), 감귤(144%), 오렌지(50%) 등은 양허제외, 딸기·자두·키위(45%) 및 감(50%)은 10년 철폐

○ 사과(후지 제외)와 배(동양배 제외)에 대해서는 ASG 설정

□ (곡류) 겉보리(324%)·쌀보리(299.7%)는 15년 철폐에 TRQ 제공 및 ASG를 설정하고, 식용대두(487%)는 양허제외에 TRQ 제공, 맥아(269%)는 12년 철폐에 TRQ 제공

□ (양념채소 및 특작) 고추(신선/냉장/건조, 270%), 마늘(신선/냉장/건조, 360%), 양파(신선/냉장/건조, 135%), 뿌리삼류(수삼/홍삼/백삼, 222.8~754.3%), 참깨(630%), 땅콩(230.5%) 등은 양허제외

○ 고추(냉동, 27%), 마늘(냉동, 27%), 양파(냉동, 27%)는 11년 철폐

(3) 기타 협정문

- ☐ (ASG)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의 대캐나다 수입 물량이 사전에 합의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
 - 초기년도 발동물량은 '09~'11년 평균소비량의 4%(쇠고기), '08~'10년 평균수입량의 120%(돼지고기) 등으로 설정
- ☐ (TRQ 관리) 한·미/EU FTA보다 간결하게 규정하여 운영의 자율성 확보
 - TRQ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협의시, 양국의 수급 상황 등 고려
- ☐ (SPS) WTO 회원국으로서 WTO/SPS 협정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 ☐ (원산지) 신선농산물은 엄격한 기준, 가공농산물은 완화된 기준 적용
 - 화훼, 채소, 과실, 곡물 등은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특혜관세를 인정
 -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 나머지 육류는 도축기준 인정(한미와 동일)
- ☐ (지리적표시) WTO 지재권협정(TRIPS) 23조의 수준으로 보호
 - * 우리측(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 캐측(캐나다 위스키, 캐나다 라이 위스키)

다. 영향 분석 결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한·캐나다 FTA의 '15년 발효 가정시 향후 15년간('15~'29) 총 4,806억원의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감소될 전망
 - 15년동안 연평균으로는 320억원의 생산액 감소 추정
 - 축산업에서 15년간 총 4,094억원(85%), 재배업에서 712억원(15%)의 생산액 감소 예상

라. 향후 일정

- ☐ 국회 비준동의 관련 대응, 협상결과 및 대책 설명 등 추진

참고 1

한·캐나다 FTA 교역현황

□ 對 캐나다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3,440	4,102	4,928	4,828	5,205
수입	3,535	4,351	6,612	5,246	4,717
무역수지	-95	-249	-1,684	-418	488
총교역액	6,975	8,453	11,540	10,074	9,922

□ 對 캐나다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천불)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A)	합계	32,653	37,202	42,433	58,149	60,808
	농산물	31,786	35,755	43,442	54,495	58,064
	축산물	659	850	1,363	2,113	2,069
	임산물	208	597	628	1,541	675
수입 (B)	합계	702,087	1,009,844	1,641,823	1,119,684	817,551
	농산물	157,464	303,215	728,013	336,502	289,262
	축산물	151,679	153,263	288,362	207,298	128,209
	임산물	392,944	553,366	625,448	575,884	528,161
무역수지(A-B)		-669,434	-972,642	-1,596,390	-1,061,535	-756,743

□ 對 캐나다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품목 품목('13)

(단위 : 천불)

순위	수출	수입
1	혼합조제식료품	8,191
2	라면	5,962
3	기타음료	3,705
4	인스턴트면	2,723
5	아이스크림	2,575
6	비스킷	2,561
7	새송이버섯	2,204
8	기타베이커리제품	2,044
9	기타파스타	1,835
10	기타동물성생산물	1,766
	펄프	290,771
	침엽수원목	150,548
	밀	83,878
	돼지고기	79,756
	침엽수제재목	62,079
	유채유	40,920
	유채	36,376
	혼합조제식료품	26,590
	보리	19,003
	유장	18,459

참고 2

한·캐나다 FTA 농산물 양허결과(우리측 양허)

(단위 : 개, 천불)

양허유형		세번수 (%)	수입액 ('09-'11) (%)	주요 품목
즉시철폐		406 (27.1)	350,050 (53.7)	산동물(말, 소, 돼지, 닭, 산양), 산식물(백합, 튤립, 수선화), 캐슈넛(미탈각), 커피(볶지않은 것), 밀(제분용), 메슬린 가루, 당밀, 면류(파스타, 라면)
3년		186 (12.4)	9,052 (1.4)	산식물(사과, 복숭아, 배, 굴나무), 한약재(황련, 감초, 사군자), 코코아조제품, 조제식료품(오트밀, 곡물), 빵, 포도주, 마요네스
5년		199 (13.3)	34,983 (5.4)	돼지고기(냉장, 냉동), 면양냉장, 냉동, 수목류(밤, 잣, 소나무 등), 고사리, 커피(볶음), 스카치 위스키, 오렌지주스(냉동), 토마토주스, 식물성 한약재(계피)
5년+ASG		1 (0.1)	99,009 (15.2)	돼지고기(냉동/기타)
6년		2 (0.1)	0 0	골분, 돼지고기(기타부위(밀폐용기의 것))
7년		10 (0.7)	72,653 (11.2)	압착플레이크(귀리의 것), 포도(조제저장처리), 사과(조제저장처리), 맥주, 로얄제리(조제식료품 기타)
10년		406 (27.1)	4,385 (0.7)	양고기(산양), 닭고기, 칠면조, 오리고기, 국화, 백합, 양배추, 무, 아스파라거스, 감자, 고구마, 아몬드, 인삼류, 과일주스(사과, 복숭아, 딸기 라임, 레몬 등)
10년+TRQ		3 (0.2)	4,843 (0.7)	사료(사료용근채류, 보조사료, 사료용조제품)
10년+TRQ+ASG		2 (0.1)	0 0	기타곡분(감자분, 조분과 분말, 감자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세번분리		3 (0.2)	764 (0.1)	견과·땅콩외 기타의 씨류(조제저장처리), 과일주스(기타), 흰포도주(2리터 이하용기)
소계		1,218 (81.2)	575,738 (88.4)	
11년		42 (2.8)	2,019 (0.3)	소식용설육(신선/냉장, 허/냉동, 족/냉동 등), 양파(냉동), 마늘(냉동), 감귤(기타/신선/건조), 맨더린(기타/신선/건조), 조제분유(유아용)
15년		4 (0.3)	0 0	식용설육(기타/냉동), 녹용, 메밀, 보리(맥주맥)
18년		1 (0.1)	0 0	조제육설육(밀폐용기의 것)
T R Q	12년	1 (0.1)	12,126 (1.9)	맥아(볶지않은 것)
	양허제외	2 (0.1)	351 (0.1)	천연꿀, 대두(콩나물용)
	세번분리	1 (0.1)	3,622 (0.6)	대두(기타)
A S G	13년	3 (0.2)	35,017 (5.4)	돼지고기(냉장/삼겹살, 냉장/기타, 냉동/삼겹살)
	15년	10 (0.7)	27 (0.0)	쇠고기(냉장/뼈없는 것, 뼈채절단/갈비, 냉동/뼈없는 것 등), 쇠고기(밀폐용기의 것, 기타조제저장), 팔(기타)
	15년+TRQ	2 (0.1)	0 0	겉보리, 쌀보리
	세번분리	2 (0.1)	38 (0.0)	사과(신선), 배(신선)
세번분리		2 (0.1)	234 (0.0)	혼합조미료, 혼합조미·조제품기타
계절관세+세번분리		1 (0.1)	0 0	감자(기타) : 칩용(계절관세)
양허제외		211 (14.1)	22,094 (3.4)	쌀, 쇠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닭고기(냉동), 오리고기(냉동), 탈전지분유, 치즈, 송이버섯, 표고버섯, 밤, 감귤(신선/건조), 인삼, 고추장, 잎담배, 제조담배
소계		282 (18.8)	75,528 (11.6)	
총합계		1,500 (100)	651,266 (100)	

참고 3

주요 품목별 양허협상 결과 비교

품 목		한·개 FTA	한·호 FTA	한·미 FTA	한·EU FTA
쌀	○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보리	○ 겉보리(324%), 쌀보리(299.7%)	15년+ASG+TRQ	양허제외	15년+ASG+TRQ	양허제외
	○ 맥아(269%), 맥주맥(513%)	12년+TRQ, 15년	15년+ASG+TRQ	15년+ASG+TRQ	15년+ASG+TRQ
옥수수	○ pakan용 옥수수(630%)	10년	18년	7년+ASG	13년
	○ 종자용 옥수수(328%)	10년	18년	5년	5년
대두	○ 식용 대두(487%)	현행 관세유지+TRQ (간장 및 대두박용은 즉시)	현행 관세유지+TRQ	현행 관세유지+TRQ	양허제외
	○ 기타(487%)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10년간 50% 감축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즉시철폐(채유,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5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감자	○ 식용 감자(304%), 냉동-건조(27%)	양허제외 (냉동, 건조,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현행 관세유지+TRQ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 칩용 감자(304%)	계절 관세(즉시/15년)	계절 관세(즉시/15년)	계절 관세(즉시/8년)	양허제외
	○ 감자분(304%)	10년+ASG+TRQ	양허제외	10년+ASG	13년
전분	○ 감자 전분(455%)	양허제외	10년간 50% 감축	15년+ASG	15년+ASG
	○ 매니옥 전분(455%), 고구마 전분(241.2%)	11년	18년/10년간 50% 감축	15년+ASG	15년
	○ 변성 전분(385.7%)	10년	15년	12년+ASG+TRQ	12년+ASG+TRQ
쇠고기	○ 신선냉장·냉동(40%)	15년+ASG,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5년+ASG
	○ 식용설육(18%)	11년	15년	15년	15년
돼지고기	○ 냉동 삼겹살(25%)	13년+ASG	양허제외	2014.1.1(냉동 목살은 2016.1.1)	10년
	○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13년+ASG	10년	10년+ASG	10년+ASG
	○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5년/6년	7년/5년	2014.1.1	6년
	○ 냉동 기타(25%)	5년+ASG	5년	2016.1.1	5년
닭고기	○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양허제외	18년	12년	13년
	○ 절단하지 않은 닭(18~20%)	11년	18년	12년	12년
	○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10년/양허제외	18년/10년	10년	10년
오리고기	○ 냉장육(18%), 냉동육(18%)	10년/양허제외	15년/18년	10년/12년	11년/14년
분류	○ 전지분류(176%)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 탈지분류(176%)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 조제분류(36%)	양허제외	15년 + TRQ	10년 + TRQ	10년 + TRQ
	○ 혼합분류(36%)	양허제외	15년	10년	10년
치즈	○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양허제외	20년/ 18년 + TRQ	15년 + TRQ	15년 + TRQ
	○ 체다치즈(36%)	양허제외	13년 + TRQ	10년 + TRQ	10년 + TRQ
꿀	○ 천연꿀(243%)	현행 관세유지+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 관세유지+TRQ
	○ 인조꿀(243%)	10년	양허제외	10년	10년
사료	○ 보조사료(50.6%)	10년+TRQ	15년	12년+TRQ	12년+TRQ
	○ 사료용 옥수수(328%)	10년	18년	즉시철폐	5년
감귤류·오렌지	○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	양허제외
	○ 맨더린, 탠저린(144%)	11년	계절 관세	15년	15년
	○ 오렌지(50%)	양허제외	계절 관세+TRQ	계절 관세+TRQ	계절 관세+TRQ
사과·배·포도	○ 사과(45%)	후지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양허제외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 배(45%)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양허제외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 포도(45%)	양허제외	계절 관세	계절 관세	계절 관세
고추	○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 냉동고추(27%)	11년	양허제외	15년	15년
마늘	○ 신선 냉장 일사저장 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 냉동마늘(27%)	11년	18년	15년	15년
양파	○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 냉동 양파(27%)	11년	15년	12년	12년
설탕	○ 원당(3%)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 백설탕(35%)	양허제외	18년+ASG	16년+ASG	16년+ASG
	○ 착색·착향된 설탕(35%)	양허제외	양허제외	16년+ASG	양허제외
인삼류	○ 뿌리삼류 7개 세 번(222.8~754.3%)	양허제외	양허제외	18년+ASG	양허제외
	○ 기타 인삼 가공품 등	10년-양허제외	10-15년(차), 양허제외	10년-15년+ASG	10년-15년+ASG
면류	○ 라면(8%), 파스타(8%)	즉시철폐	즉시철폐/10년	즉시철폐	즉시철폐

I. 추진 경과

□ '09.1월 한 · 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 '09.6월 제1차 협상 개최 후 '10.5월까지 총 4차례 공식 협상 개최

* 제1차('09.6월), 제2차('09.9월), 제3차('09.12월), 제4차('10.5월)

○ 상품시장 개방 수준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관한 양측 입장 차이로 협상 중단

□ '13.7월 양국 간 한 · 뉴질랜드 FTA 현황점검 회의 개최

□ '13.7월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한 · 뉴질랜드 정상회담 개최

○ 한 · 뉴질랜드 FTA 협상 재개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 확인

□ '13.11월 한 · 뉴질랜드 FTA 비공식회의 개최

□ '13.12월 한 · 뉴질랜드 양국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한 · 뉴질랜드 FTA 공식협상 재개 합의

□ '14.2월 제5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협상 타결 전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 2차례 비공식 협상 개최

* 공식협상 : 제5차('14.2월), 제6차('14.3월), 제7차('14.6월), 제8차('14.8월), 제9차('14.10월)

* 비공식 협상 : 회기간 협상 2회('14.4월, '14.9월)

○ 제9차 공식협상에서 대다수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 달성

□ '14.11.15일 한 · 뉴질랜드 FTA 타결 선언

Ⅱ. 주요 협상 결과

1 농산물 양허

우리측 양허

가. 양허 개요

□ 양허제외 및 예외적 취급(TRQ/부분감축/계절관세/10년초과 장기 철폐)이 전체 농산물(1,500개) 중 **40.1%**(602개)로 한·미(12.3%)/한·EU(14.5%)에 비해 보수적(한·호 FTA : 38.5%, 한·캐 FTA : 18.8%)

□ 쌀, 돼지고기 삼겹살, 꿀, 감귤, 사과, 배, 고추·마늘·양파(냉동 제외), 인삼 등 주요 농산물 194개(품목수 기준 12.9%) 품목은 양허제외

* (양허제외) 한·미 1.0%(16개), 한·EU 2.8%(41개), 한·호 10.5%(158개), 한·캐 14.1%(211개)

□ 그 밖에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부분감축 및 농업 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

- * TRQ(4개 품목, 25개 세번) : 탈전지분유·연유, 치즈, 버터, 조제분유
- * 계절관세(2개 품목, 2개 세번) : 감자, 호박
- * 부분감축(6개 품목, 12개 세번) : 옥수수, 콩, 맥아, 전분, 사료용 근채류 등
- * ASG(1개 품목, 8개 세번) : 쇠고기

□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등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즉시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 차별화(품목수 기준 59.9%)

* 즉시~10년철폐 비중(품목수 기준) : 한·미 FTA 87.7%, 한·EU FTA 85.5%, 한·호 61.5%, 한·캐 81.2%

< 한·뉴질랜드 FTA 양허유형별 농산물 양허 >

(단위 : 개, 천불)

양허유형		한·뉴질랜드FTA				한·미FTA		한·EUFTA	
		세 번 수	비중(%)	대뉴수입액 ('09-'11)	비중(%)	세번수	비중(%)	세번수	비중(%)
일반 철폐	즉시철폐	248	(16.5)	20,857	(4.6)	578	(37.8)	610	(42.1)
	2~5년 철폐	249	(16.6)	22,856	(5.1)	356	(23.3)	295	(20.4)
	6~10년 철폐	401*	(26.7)	166,386	(36.8)	408	(26.6)	334	(23.1)
소계		898	(59.9)	210,099	(46.4)	1,342	(87.7)	1,239	(85.5)
장기 철폐	12년 철폐	-	-	-	-	40	(2.6)	16	(1.1)
	13년 철폐	1	(0.1)	7,257	(1.6)	-	-	27	(1.9)
	15년 철폐	308	(20.5)	142,205	(31.4)	108	(7.1)	90	(6.2)
	16년 철폐	-	-	-	-	2	(0.1)	1	(0.1)
	17년 철폐	3	(0.2)	1,217	(0.3)				
	18년 철폐	57	(3.8)	47	(0.0)	7	(0.5)	7	(0.5)
	20년 철폐	2	(0.1)	0	(0.0)	-	-	2	(0.1)
예외 취급	TRQ	22	(1.5)	67,519	(14.9)	15	(1)	25	(1.7)
	10년간 50%감축	12	(0.8)	628	(0.1)	-	-	-	-
	기타 (세번분리)	1	(0.1)	9,985	(2.2)	-	-	-	-
	계절관세	2**	(0.1)	11,457	(2.5)	1	(0.1)	1	(0.1)
	양허제외	194	(12.9)	1,979	(0.4)	16	(1)	41	(2.8)
소계		602	(40.1)	242,293	(53.6)	189	(12.3)	210	(14.5)
총 합계		1500	(100)	452,391	(100)	1,531	(100)	1,449	(100)

* 7년, 10년 + TRQ 포함

** 세번분리 1개 포함

나. 주요 농산물 양허결과

☐ **(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 번)은 협정적용 대상에서 제외*

* 관세철폐 의무 이외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 의무 적용 배제

☐ **(쇠고기)** 뉴측 관심품목인 쇠고기(18%, 40%)에 대해 **15년 철폐**
확보('15년 발효시, 한미 FTA 보다 3년 더 길게 관세를 철폐하는 효과)

○ 갈비, 도체와 이분도체 등 주요 세번(8개)에 대해서는 ASG 설정

* (ASG 초기물량) '09~'11년 평균 수입량의 110%, 증량율 : 복리 2%

□ (돼지고기·닭고기) 돼지고기(18~30%) 삼겹살, 넓적다리·어깨살, 도체와 이분도체는 양허제외, 나머지 부위는 7~18년 철폐, 닭고기(18~27%)는 18년 철폐 및 양허제외

□ (낙농품) 원유 수급 조절 중요 품목인 탈·전지분유(176%)와 연유(89%)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TRQ를 부여

○ 치즈(36%)는 7~15년 철폐, 버터(89%)는 10년 철폐, 조제 분유(36, 40%)는 13년, 15년 철폐하면서 각각 TRQ를 부여

□ (과실류) 사과(45%), 배(45%), 포도(45%), 감귤(144%), 오렌지(50%), 딸기·자두(45%), 감(50%) 등은 양허제외, 키위(45%)는 6년 철폐

□ (곡류) 보리(324~513%), 대두(사료용, 콩나물용, 기타, 487%)는 양허제외,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487%)와 옥수수(328~630%)는 10년간 50% 관세감축

○ 식용감자(304%)는 칩용에 대해서만 계절관세(12~4월 즉시철폐, 5~11월 15년 철폐)를 부여하고 기타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 (양념채소 및 특작) 고추(270%), 마늘(신선/냉장, 건조, 360%), 양파(신선/냉장, 건조, 135%), 인삼류(수삼/홍삼/백삼, 222.8, 754.3%), 참깨(630%), 땅콩(230.5%) 등은 양허제외

○ 호박(27%)은 계절관세(12~5월 5년 철폐, 6~11월 현행관세 유지), 마늘(냉동, 27%)은 18년 철폐, 양파(냉동, 27%)는 15년 철폐

뉴질랜드측 양허

□ 뉴측은 전체 농산물(1,000개) 중 **99.3%(993개)**의 농산물 관세 (0 또는 5%)를 즉시철폐

○ 7개 세번에 대해서는 **3~7년 철폐**(간장 등 3개 3년 철폐, 마가린 5년, 야자유 등 3개 세번은 7년)하고, 나머지는 모두 즉시 철폐

양허유형	세번수	비중(%)	대뉴 수출액 (천불)	비중(%)	주요 품목
즉시철폐	993	(99.3)	21,430	(94.3)	7개 세번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3년철폐	3	(0.3)	1,292	(5.7)	스위트 비스킷, 간장, 기타 장류
5년철폐	1	(0.1)	0.3	(0.001)	마가린
7년철폐	3	(0.3)	0	(0)	육두구 기타, 야자유(조유, 기타)
소계	1,000	(100)	22,722	(100)	

2 기타 협정문

□ **(ASG) 쇠고기**(갈비, 도체와 이분도체 등) **8개 세번**에 대해 대뉴 수입 물량이 사전에 합의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

○ 발동수준은 '09~'11년 평균 수입물량의 **110%**에서부터 시작 하여 관세철폐기간 동안 2% 복리 증량

□ **(TRQ 관리)** 한·미/EU FTA보다 간결한 규정으로 합의함으로써 운영의 자율성 확보

○ TRQ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협의시, 양국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함

□ **(SPS)** WTO 회원국으로서 **WTO/SPS** 협정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 SPS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위해 연락처 (Contact point) 지정 및 **SPS위원회** 설치

□ **(원산지)** 신선 농산물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한 반면(도축 불인정),

○ 가공 농산물은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 **(농수산업협력)**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발동시 양국간 사전협의 및 조기 복구책 논의를 의무화하고, 다양한 농업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양국간 농업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동물질병위험분석 등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 농림수산 분야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 **(서비스·투자)** 한·미 FTA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방

* 중개업은 미가공 농산물, 산동물, 음료에 대해, 도매업은 곡물, 곡분, 육류, 가금, 홍삼, 비료에 대해, 소매업은 쌀, 인삼, 홍삼에 대해, 저장 및 창고업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유보(미개방)

□ **(인력 이동)**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조건 완화, 일시고용입국 및 일차산업 훈련비자 도입으로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

○ 워킹홀리데이는 현행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일시 고용입국 200명, 일차산업 훈련비자 50명 확보

Ⅲ. 국내 대책

◆ '14.9.18일 발표한 한·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을 활용하되, 향후 한·뉴 FTA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수립 추진

□ 통상여건이 유사한 영연방 3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 **3개국 FTA를 종합하여** 축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수립

* (한·호) '09.3 협상개시, '13.12 타결, '14.9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한·캐) '05.7 협상개시, '14.2 타결, '14.10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한·뉴) '09.6 협상개시, '14.11 타결

○ 한·호/캐 FTA가 먼저 타결됨에 따라 호주·캐나다 FTA 영향분석에 기초하여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수립·발표(9.18)

* 호주·캐나다 FTA로 인한 15년간 예상피해액 수준인 2.1조원을 피해분야(축산업, 재배업)에 향후 10년간 추가 지원

- 한·뉴질랜드 FTA는 협상타결 이후 영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기로 함

○ 호주·캐나다 FTA의 국회 비준논의 과정에서 여·야·정 FTA 협의체를 통하여 추가 지원방안* 마련(11.13)

* 축산분야 6개사업 금리인하(2개 3% → 1.8, 4개 3% → 2), 구제역 방역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무허가축사 양성화,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5억원 → 15), 의무경찰 우우급식 확대, 대기업과 소비촉진 MOU체결 등

□ 향후 한·뉴 FTA에 대하여 협상결과, 외국산간 소비대체관계, 소비자의 농축산물 소비성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해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9.18일)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뉴 FTA에 대한 국내대책을 마련할 계획

IV. 향후 일정

- 상품양허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영향 분석 실시
- 법률검토, 정식서명 등 후속 협정체결 절차 대응 철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 ⇒ 가서명(initialing) ⇒ 번역작업 ⇒ 정식서명(signing)

- 농업인, 협회, 학계 등을 대상으로 협상결과 설명 및 동향 점검
-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한·
뉴 FTA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마련

참고 1

한 · 뉴질랜드 교역현황

□ 對 뉴질랜드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891	918	1,104	1,464	1,491
수 입	879	1,176	1,474	1,336	1,395
무역수지	12	-258	-370	128	97
총교역액	1,770	2,094	2,578	2,800	2,886

□ 對 뉴질랜드 농림축산물 교역현황

(단위 : 천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합 계	19,713	22,056	26,209	29,902
	농산물	15,620	17,157	21,427	22,026
	축산물	3,998	4,872	4,745	7,764
	임산물	95	27	37	112
수입	합 계	640,850	828,165	1,036,553	912,137
	농산물	89,588	89,178	117,586	113,222
	축산물	231,799	324,050	457,812	397,713
	임산물	319,463	414,937	461,155	401,202
무역수지		-621,137	-806,109	-1,010,344	-882,235

□ 對 뉴질랜드 주요 농림축산물 수출입품목('13)

(단위 : 천불)

순위	수출품목	금액	수입품목	금액
1	젤라틴	9,514	침엽수원목	347,009
2	커피조제품	7,124	쇠고기	114,006
3	라면	2,805	치즈	102,242
4	기타베이커리제품	1,638	펄프	61,179
5	기타음료	1,205	침엽수제재목	43,589
6	비스킷	999	기타 축산조제품	31,603
7	혼합조제식료품	808	키위	30,580
8	김치	795	카세인	24,982
9	인스턴트면	715	양장	19,146
10	아이스크림	669	면양원피	17,240

참고 2

한·뉴질랜드 FTA 농산물 양허결과(우리측 양허)

(단위 : 개, 천불)

양허 유형		세 번 수	비 중 (%)	수입액 (’09-’11)	비 중 (%)	주요 품목
즉시 철폐		248	(16.5)	20,857	(4.6)	산동물(돼지, 닭, 산양), 버찌(신선), 밀(제분용), 라면, 당밀(주정제조용), 흰 포도주 등
3년		117	(7.8)	8,158	(1.8)	감자(조제저장처리), 당밀(기타), 당시럽, 두부, 마요네스, 사탕무당(당도 98.5도 이하), 소주, 야자유(정제유), 커피크리머, 탁주 등
5년		132	(8.8)	14,699	(3.2)	간장, 고추장, 냉면, 된장, 라임쥬스(기타), 밀크알부민, 배추(신선/냉장), 소시지, 완두(종자용), 인스턴트커리, 조제식료품(국물), 코코아조제품, 춘장 등
6년		1	(0.1)	53,982	(11.9)	키위프루트(신선)
7년		145	(9.7)	62,652	(13.8)	감자(건조), 국수, 단풍당시럽, 대두유, 딸기조제저장처리, 로얄제리 등
7년+TRQ		1	(0.1)	26,293	(5.8)	체더치즈
10년		252	(16.8)	14,367	(3.2)	감자(종자용), 과아버(신선/건조), 들기름과 그 분획물, 매니옥(신선), 버찌(일시저장처리), 변성유장(기타), 복숭아쥬스, 식빵, 채소쥬스, 타피오카, 파스타(기타) 등
10년+TRQ		2	(0.1)	9,091	(2.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 지와 유, 버터
소계		898	(59.9)	210,099	(46.4)	
13년		1	(0.1)	7,257	(1.6)	냉동크림(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초과)
15년		300	(20.0)	34,357	(7.6)	감자(기타/조제저장처리), 고구마줄기(건조), 고사리, 과당, 김치 등
15년+AS G		8	(0.5)	107,847	(23.8)	쇠고기(냉동/갈비/뼈채절단), 쇠고기(냉동/기타/뼈채절단), 쇠고기(신선/냉장/갈비/뼈채절단한 것) 등
17년		3	(0.2)	1,217	(0.3)	조제분유(유아용), 조제식료품(유아용), 크림기타(미농축/미첨가)
18년		57	(3.8)	47	(0.0)	가공곡물(귀리의것), 기타과실(건조), 느타리버섯, 닭고기(기타/미절단/냉장), 로얄제리, 마늘(냉동), 멜론(기타/신선), 은행, 장미 등
20년		2	(0.1)	0	(0.0)	밀크와 크림(지방분이 전 중량의 1/100 초과, 6/100 미만), 밀크와 크림(지방분이 전 중량의 1/100이하)
T R Q	12년	1	(0.1)	34,080	(7.5)	치즈(모짜렐라)
	13년	1	(0.1)	11,523	(2.5)	조제분유(유아용)
	15년	9	(0.6)	15,546	(3.4)	조제식료품(유아용), 치즈(가공), 치즈(가우더), 치즈(에멘탈), 치즈(카망베르), 치즈(크림치즈) 등
	현행 관세	11	(0.7)	6,370	(1.4)	가당연유, 버터밀크, 분유기타, 연유기타, 전지분유, 탈지분유 등
10년간 50% 감축		12	(0.8)	628	(0.1)	콩(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맥아(볶지 않은 것), 사료용 근채류, 옥수수 기타, 이눌린, 전분(감자의 것), 전분(기타), 전분(옥수수의 것) 등
세번분리		1	(0.1)	9,985	(2.2)	녹용(전지)
계절관세		2	(0.1)	11,457	(2.5)	호박(신선), 감자(기타)
양허 제 외		194	(12.9)	1,979	(0.4)	쌀, 돼지고기(삼겹살), 천연꿀, 양파(신냉), 쪽파(신냉), 고추, 마늘(신냉), 파, 수박, 사과, 감귤, 겔보리, 쌀보리, 참깨, 낙화생, 인삼 등
소계		602	(40.1)	242,293	(53.6)	
총 합계		1,500	(100)	452,391	(100)	

참고 3

한·뉴/호/캐/미/EU FTA 주요 농산물 양허 비교

품목		한·뉴 FTA	한·호 FTA	한·캐 FTA	한·미 FTA	한·EU FTA
쌀	o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겔보리(324%), 쌀보리(299.7%)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TRQ	15년+ASG+TRQ	양허제외
보리	o 맥아(269%), 맥주맥(513%)	10년간 50% 감축(맥아) /양허제외	15년+ASG+TRQ	12년+TRQ(맥아)	15년+ASG+TRQ	15년+ASG+TRQ
	o 팝콘용 옥수수(630%)	10년간 50% 감축	18년	10년	7년+ASG	13년
옥수수	o 종자용 옥수수(328%)	10년간 50% 감축	18년	10년	5년	5년
	o 식용 콩(487%)	양허제외	현행 관세 유지+TRQ	현행 관세 유지+TRQ (간장·대두박용은 즉시)	현행 관세 유지+TRQ	양허제외
콩	o 기타(487%)	양허제외(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은 10년간 50% 감축)	10년간 50% 감축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즉시 철폐(채유,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5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감자	o 식용 감자(304%), 냉동·건조(27%)	양허제외(냉동·건조 15년/7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냉동·건조 15년/7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냉동·건조·종자용 10년)	현행 관세 유지+TRQ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o 칩용 감자(304%)	계절 관세(즉시/15년)	계절 관세(즉시/15년)	계절 관세(즉시/15년)	계절 관세(즉시/8년)	양허제외
	o 감자분(304%)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ASG+TRQ	10년+ASG	13년
	o 신선·냉장·냉동(40%)	15년+ASG	15년+ASG	15년+ASG/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쇠고기	o 식용설육(18%)	15년	15년	11년	15년	15년
	o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양허제외	13년+ASG	2014.1.1	10년
돼지고기	o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양허제외	10년/15년	13년+ASG	10년+ASG	10년+ASG
	o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18년/양허제외	7년/양허제외	5년/6년	2014.1.1	6년
	o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양허제외	18년	양허제외	12년	13년
닭고기	o 절단하지 않은 닭(18, 20%)	18년/양허제외	18년	10년/11년	10년/12년	10년/12년
	o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양허제외	18년/10년	10년/양허제외	10년	10년
	o 탈전지분류·연유(176, 89%)	현행 관세 유지+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 관세 유지+TRQ	현행 관세+TRQ
분류	o 조제분류(36, 40%)	13/15년+TRQ	13/15년+TRQ	양허제외	10년+TRQ	10년+TRQ
	o 혼합분류(36%)	10년/15년	13년/15년	양허제외	10년	10년
	o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12/15년+TRQ	20년/18년+TRQ	양허제외	15년+TRQ	15년+TRQ
치즈	o 체다치즈(36%)	7년+TRQ	13년+TRQ	양허제외	10년+TRQ	10년+TRQ
	o 버터(89%)	10년+TRQ	15년+TRQ	양허제외	10년+TRQ	10년+TRQ
꿀	o 천연꿀(243%)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 관세 유지+TRQ	현행 관세 유지+TRQ	현행 관세+TRQ
	o 인조꿀(243%)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	10년	10년
감귤류·오렌지	o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	양허제외
	o 맨더린, 탠저린(144%)	양허제외	계절 관세	11년	15년	15년
	o 오렌지(50%)	양허제외	계절 관세+TRQ	양허제외	계절 관세+TRQ	계절 관세+TRQ
사과·배·포도	o 사과(45%)	양허제외	양허제외	후지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후지산 20년 (기타품종 10년) +ASG	후지산 20년 (기타품종 10년) +ASG
	o 배(45%)	양허제외	양허제외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동양배 20년 (기타품종 10년)	동양배 20년 (기타품종 10년)
	o 포도(45%)	양허제외	계절 관세	양허제외	계절 관세	계절 관세
키위	o 키위(45%)	6년	계절 관세(현행/15년)	10년	15년	15년
호박	o 호박(27%)	계절 관세(5년/현행)	15년	10년	즉시	즉시
고추	o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o 냉동고추(27%)	양허제외	양허제외	11년	15년	15년
마늘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o 냉동마늘(27%)	18년	18년	11년	15년	15년
양파	o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o 냉동 양파(27%)	15년	15년	11년	12년	12년
인삼류	o 뿌리삼류(222.8, 754.3%)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18년+TRQ+ASG 18년+ASG	양허제외
	o 기타 인삼 가공품(754.3%)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15년+ASG	10년/15년+ASG

가. 식량작물

품목	협상 결과
쌀	○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 : 양허 제외
콩	○ 식용 콩(487%, 콩나물용, 기타) : 양허제외 -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10년간 50% 감축 - 사료용 : 양허제외
감자·감자분	○ 칩용감자(304%)는 계절관세, 기타 식용(304%)은 양허제외 - 칩용 : 계절관세(12~4월: 즉시 철폐 / 5~11월: 15년 철폐) - 종자용 감자(304%)는 10년 철폐, - 냉동·건조(27%) : 각각 15년, 7년 철폐 ○ 감자분(304%) : 양허 제외
보리	○ 겉보리(324%), 쌀보리(299.7%) : 양허 제외 - 맥아(269%) : 10년간 50% 감축 - 맥주맥(513%) : 양허 제외 - 보리 기타(299.7%) : 양허 제외
옥수수	○ 팝콘용(630%), 종자용·사료용(328%) : 10년간 50% 감축 - 옥수수 기타(328%) : 10년간 50% 감축
전분	○ 감자전분(455%), 옥수수전분(226%), 기타전분(800.3%) : 10년간 50% 감축 - 밀전분(50.9%), 매니옥전분(455%), 고구마전분(241.2%) : 양허 제외
기타	○ 고구마(385%, 냉동은 45%), 기타 서류(385%) : 양허 제외 - 발효주정(270%) : 양허 제외 - 팔 종자용(420.8%) : 7년 철폐 - 팔 기타(420.8%) : 양허 제외 - 메밀(256.1%) : 양허 제외 - 울무(800.3%)·기타가공곡물(800.3%) : 양허 제외

나. 육 류

품목	협상 결과
쇠고기	○ 민감한 8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냉장 및 냉동), 갈비(신선, 냉장 및 냉동) 등 -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37,000톤(1년차, 매년 2% 증량) → 48,821톤(15년차) -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 ○ 식용설육(족·꼬리·허 등, 18%), 육과 식용설육(27%) : 15년 철폐
돼지고기	○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어깨살, 삼겹살, 기타(냉장/냉동, 22.5/25%) : 양허 제외 ○ 식용설육(18%) : 18년 철폐 ○ 돼지고기 가공품(27~30%) : 양허제외 ○ 소시지(18%)·소시지 기타(30%) : 5년 철폐
닭고기	○ 닭 다리·가슴·날개(냉장/냉동, 18/20%) : 양허 제외 ○ 통닭(18~20%) : 양허 제외, 기타 미절단 냉장닭고기(18%) : 18년 철폐 ○ 닭고기 가공품(30%) : 양허제외 ○ 삼계탕(30%) : 18년 철폐
계란	○ 계란(41.6), 난황(27%) : 15년 철폐 ○ 종란(27%) : 18년 철폐 ○ 조란기타(27%) : 15년 철폐(신선은 18년 철폐)
기타 육류	○ 오리고기(18~27%) : 냉장육 15년 철폐, 냉동육 18년 철폐(냉동 간, 기타설육은 15년 철폐) ○ 산양·면양고기(22.5%) : 10년 철폐 ○ 칠면조 고기(18~27%) : 10년, 15년 철폐 ○ 녹용 전지(20%) : 세번 분리(건조·가공은 15년 철폐, 기타는 양허 제외) ○ 녹용 기타(20%) : 15년 철폐, 녹각(20%) : 양허 제외

다. 낙농품, 꿀, 사료

품목	협상 결과
분유 연유 유당	○ 탈지분유·전지분유(176%)·연유(89%) : 11개 세번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 + TRQ 제공 - 무관세쿼타(TRQ) 1,500톤(매년 3% 증량, 10년차 1,957톤 이후 고정) ○ 혼합분유(36%) : 10년/15년 철폐 ○ 조제분유(36~40%) : 2개 세번에 대해 13년/15년 철폐 + TRQ 제공 - 무관세쿼타 230톤(매년 2% 증량) ○ 유당(49.5%) : 10년 철폐/양허 제외, 유당시럽(20%) : 10년/15년 철폐
치즈	○ 치즈(36%) : 10개 세번에 대해 7년~15년 철폐 + TRQ 제공 - 무관세쿼타 7,000톤(매년 3% 증량)
밀크와 크림	○ 밀크와 크림(36%) : 13~20년 철폐 - 지방함량 6% 이하 : 20년 철폐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17년 철폐 -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 13년 철폐
버터	○ 버터(89%) : 2개 세번에 대해 10년 철폐 + TRQ 제공 - 무관세쿼타 800톤(매년 3% 증량)
유장	○ 식용 유장(49.5%) : 15년 철폐 ○ 사료용(49.5%) : 10년 철폐
꿀	○ 천연꿀, 인조꿀(243%) : 양허 제외 ○ 로얄제리(8%) : 18년 철폐 ○ 로얄제리·벌꿀조제품(8%) : 7년 철폐
사료	○ 사료용 근채류(100.5%) : 양허 제외 ○ 보조사료(50.6), 배합사료(대용유, 71%) : 15년 철폐 ○ 배합사료(양돈, 양계, 축우용, 4.2~5%) : 즉시 철폐

라. 과일·과채류

품목	협상 결과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	○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45%) : 양허 제외
감귤류	○ 감귤, 감귤류(144%) : 양허 제외 ○ 맨더린(144%) : 양허 제외
오렌지	○ 오렌지(50%) : 양허 제외
키위	○ 키위(45%) : 6년 철폐
멜론	○ 멜론(45%) : 18년 철폐
기타 딸기 (45%)	○ 나무딸기(신선 45%, 냉동 30%) : 15년 철폐 ○ 초본류딸기(일시저장처리, 30%) : 10년 철폐 ○ 딸기(조제저장처리, 45%) : 7년 철폐 ○ 딸기 주스(50%) : 15년 철폐
토마토	○ 토마토(신선·냉장, 45%) : 양허 제외 ○ 토마토 주스(30%) : 10년 철폐 ○ 조제저장처리(30%) : 15년 철폐 ○ 토마토 케첩(8%), 토마토 소스(45%), 토마토 페이스트(5%) : 5년 철폐
오이, 호박	○ 오이(27%) : 15년 철폐 ○ 호박(27%) : 계절관세(12~5월: 5년 철폐 / 6~11월: 현행관세 유지)
가지	○ 가지(27%) : 5년 철폐

마. 양념채소, 인삼, 특작

품목	협상 결과
고추	○ 신선고추, 건조고추(270%), 냉동고추(27%), 고춧가루(270%) : 양허 제외
마늘	○ 통마늘·김마늘·건조마늘·일시저장처리(360%) : 양허 제외 ○ 냉동마늘(27%) : 18년 철폐 ○ 조제저장처리(30%) : 15년 철폐
양파	○ 신선 및 건조 양파(135%) : 양허 제외 ○ 냉동 양파(27%) : 15년 철폐 ○ 조제저장처리(30%) : 15년 철폐
생강	○ 신선·건조·기타 생강(377.3%) : 양허 제외 ○ 설탕저장처리(30%) : 15년 철폐
파	○ 건조 파(30%), 쪽파(27%) : 양허 제외 ○ 조제저장처리 쪽파(30%) : 15년 철폐
인삼	○ 인삼류 23개 주요품목 : 양허 제외 -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삼류(222.8~754.3%) - 홍삼분(754.3%)·백삼분(18%) - 홍삼엑스·홍삼엑스분(754.3%), 백삼엑스·백삼엑스분(20%) - 홍삼타블렛(754.3%)·백삼타블렛(18%) - 인삼잎·줄기, 인삼종자, 홍삼차(754.3%) 등 ○ 인삼차(8%) : 10년 철폐 ○ 인삼음료(8%) : 7년 철폐
참깨, 참기름, 땅콩, 들깨, 들기름	○ 참깨·참기름(630%), 땅콩(230.5%) : 양허 제외 ○ 들깨(40%) : 15년 철폐, 들기름(36%) : 10년 철폐

바. 엽근채류

품목	협상 결과
당근	○ 신선 당근(30%) : 양허제외 ○ 냉동(27%) : 10년 철폐, 건조(30%) : 18년 철폐
무	○ 신선 무(30%), 건조(30%) : 15년 철폐 ○ 신선 순무(27%) : 10년 철폐
배추	○ 배추 신선, 기타(27%) : 5년 철폐
양배추	○ 양배추 신선(27%) : 7년/10년 철폐 ○ 양배추 건조(30%) : 15년 철폐
기타	○ 연뿌리(설탕저장처리, 30%) : 10년 철폐 ○ 고구마줄기, 토란줄기(30%) : 15년 철폐
기타채소	○ 더덕(신선 27%, 건조 30%), 도라지 신선(27%) : 양허제외 ○ 스위트콘(건조·종자용 370%, 냉동 30%) : 15년 철폐
기타채소 혼합물, 균질화한 채소	○ 기타채소 혼합물(신선·건조, 27%) : 7년 철폐 ○ 기타채소 혼합물(냉동, 27%) : 15년 철폐 ○ 균질화한 채소(유아용 퓨레콘, 20%) : 10년 철폐

사. 가공식품

품목	협상 결과
설탕	○ 정당(40%) : 18년 철폐, 양허 제외 ○ 원당(3%) : 즉시 철폐 ~ 5년 철폐
대두유, 옥수수유	○ 대두유(5.4%) : 식품용은 10년, 기타는 7~10년 철폐 ○ 옥수수유(8%) : 10년 철폐(옥수수유와 그 분획물은 7년 철폐)
혼합조미료	○ 혼합조미료(45%) : 15년 철폐
장류	○ 된장, 춘장(8%) : 5년 철폐 ○ 간장(8%), 고추장(45%), 기타 장류(45%) : 5년 철폐
과자류, 빵류, 기타 식품류	○ 초코렛류(8%) : 5년 철폐, 15년 철폐 ○ 식빵, 건빵, 귀리빵 등 빵류(8%) : 10년 철폐 ○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베이커리제품기타(8%) : 15년 철폐 ○ 커피(볶지않은 것, 2%) : 즉시 철폐, 커피(볶음, 8%) : 7년 철폐 ○ 라면(8%), 포도주(15%) : 즉시철폐 ○ 소주(30%) : 3년 철폐

- ◇ 기존 경쟁력 제고대책 보완 및 공세적 수출 확대 중점 추진하고, 투융자는 10년간('15~'24) 총 21조원 추가 지원('15년은 계획대비 2,577억원 증액)
 - * 한·뉴 FTA는 협상 타결 후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 수립
- ◇ 워크숍(3회) 및 전문가협의회(9회), 생산자단체 간담회(5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하여 농업인 건의사항 최대한 반영*
 - * 한우 전문판매장 설치 및 농식품 부산물유통센터 설치 지원, 양돈조합 패커 육성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가. 축산업 분야

- (비용 절감) 축사시설현대화 투융자 및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비육용 74개소, 번식용 15 → 번식용 89)
 - * 투융자계획 : 기존 '15~'20, 1.3조원 → 조정 '14~'24, 1.5
- 사료직거래구매자금 확대(2조원 → 2.33) 및 금리 인하(3% → 2.5)하고, 농식품부산물의 사료 활용을 위한 부산물유통센터 설치 지원('15~'24 총 20개소)
- 방역지원 확대* 및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15 모델 마련, '16~'17 시범사업)
 - * 가금농가 맞춤형 컨설팅, 거점 소독시설 설치, 영세농 구제역백신 시술비 신규 지원 등
- (품질 차별화) 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종축 생산·공급 가속화 및 '(가칭) 한우 특성화사업단' 운영('15~'19)
- (유통·가공) 한우 직거래 활성화('15~'22, 판매장 160개소) 및 역량 있는 양돈조합(약 3개소)에 대한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한 컨설팅 신규 지원('15~'19, 총 500개소)
- (성장동력 창출) 중점관리 품목(가공품, 열처리제품 등) 지정 및 원료구매 자금 신규 지원('15년 260억원) 등을 통해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 (친환경 축산물) 친환경 축산 직불금 지원 확대*, 유통기반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
 - * 유기인증 지원 한도(2천만원/호 → 3) 및 기간(3년 → 5) 확대, 동물복지 직불 신규 지원('16)

- (분뇨·악취 관리) 기존시설 개보수 지원 등 분뇨처리시설 지원 내실화 및 축산환경관리원 설립('15) 등을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 악취 관리지침 마련('15) 및 저감시설(미생물제제 생산시설 등) 신규 지원

나. 재배업 분야

- (보리) 품질향상을 위한 보리 건조·저장시설* 지원 확대('14~'24 40개소) 및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소비기반 확대 추진
 - * 개소수·저장능력 : ('14) 2개소·2천톤 → ('24) 40·40(식용 생산량의 약 1/3 수준)
- (감자) 가공용 수입감자 국산 대체를 위한 감자 저온저장시설 신규 지원('16) 및 가공용 품종(칩용 가을재배 품종 등) 개발
- (콩) 생산·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종합처리장(SPC) 설치('14 : 2개소 → '24 : 12) 및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총 지원개수 : 400개소 → 800)
- (마늘·양파) 마늘 우량종구생산단지 조성,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마늘·양파 주산지 육성('24년까지 12개소)

다.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 (금리인하) 농가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 금리 0.5%p 인하*(3% → 2.5%) 및 인센티브자금 지원 확대**
 - * 농가사료직거래자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 도축·가공업체 지원('14 : 300억원 → '15 : 500), 가축계열화사업('14 : 90억원 → '15 : 150)
- (세제지원) 비용 경감 및 원활한 영농상속을 위한 지원 확대(4종)
 - * ①영농상속공제 상속요건 완화, ②부가세 사후환급 기자재 5종 추가(47종 → 52), ③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 ④액비차량 면세유 적용('17년 시행)
- (피해보전직불·폐업) 피해보전비율 상향 검토 및 운용기간 연장(3년)

가. TPP 협상 동향

□ (경과) '10.3월~'13.8월까지 총 19차례 공식협상 개최, '13.10월 이후 TPP 수석대표회의와 TPP 각료회의를 통한 협상진전 모색 중

□ (동향) '14.2월 · 5월 TPP 각료회의, 7월 · 9월 수석대표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미 · 일간 시장접근 협상에서의 입장차 등으로 성과 도출에 실패

* 日언론에 따르면, '14.4월 미·일 양자협의 결과, 쌀·보리·설탕·낙농품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쿼터(TRQ) 제공, 쇠고기는 현행관세(38.5%)를 20년간 9%까지 인하, 돼지고기는 차액관세제도상의 기본가격 대폭 인하 등의 방향으로 협의 중

○ '14.10월말 내지 11월초 TPP 각료회의 개최 예정

나. 우리나라의 TPP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

□ (예비 양자협의) TPP 관심 표명('13.11.29) 후 '14.1월~3월까지 12개 회원국과 1차 예비 양자협의 완료, 4월 이후 2차 예비 양자협의 진행 중

□ (TPP 심층연구) '13.12월부터 부처 공동으로 TPP 참여시 영향 분석

* 한미 FTA 양허수준과 비교한 시나리오(쌀은 양허제외)에 기초하여 분석(한호/캐 FTA 체결 전제)

○ (거시경제효과) TPP 참여시 발효 10년 후 실질 GDP 1.7~1.8% 증가, TPP 불참시 발효 10년 후 실질 GDP 약 0.12% 감소 예상

○ (분야별 효과) 제조업 분야는 전반적인 무역수지 개선 및 생산증가, 농업 및 수산업 분야는 무역수지 악화 및 생산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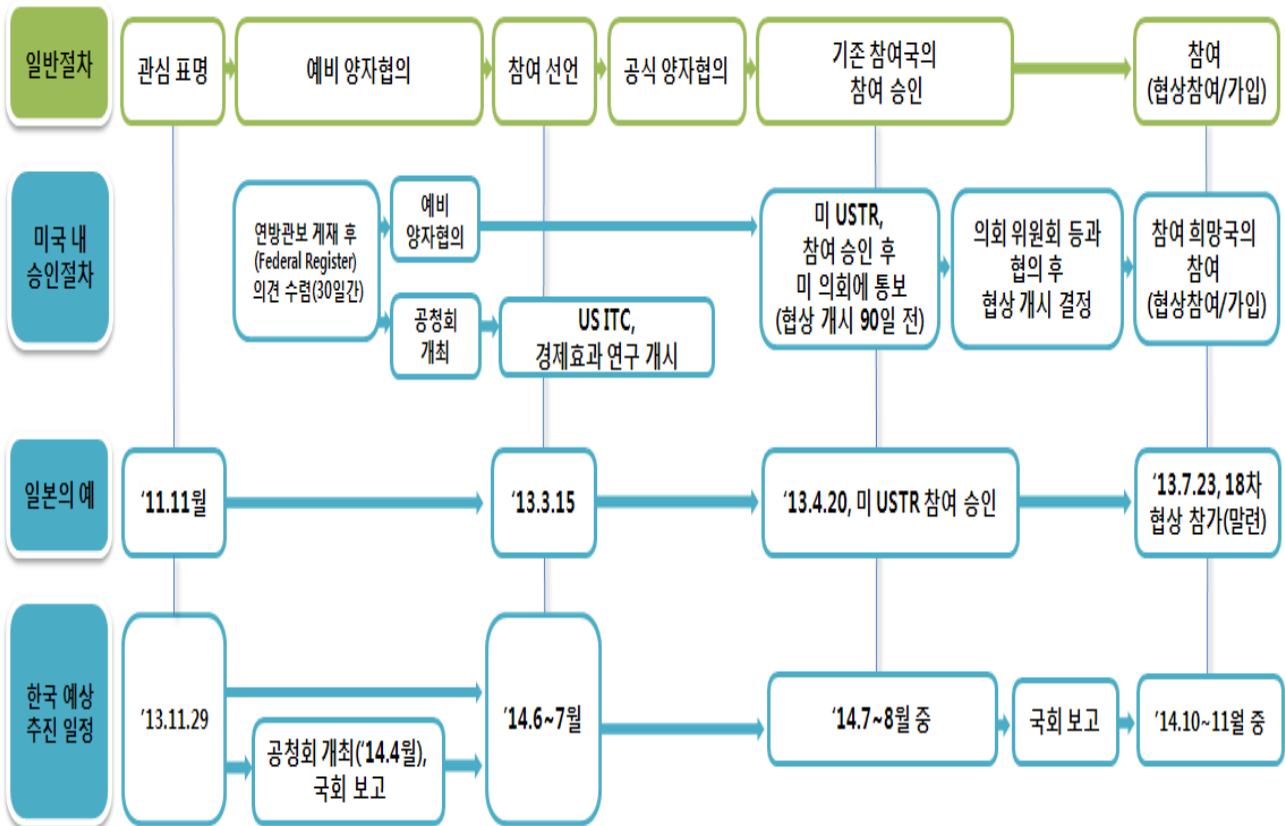
* (제조업) 무역수지 개선(연간 2~4억불), 생산증가(연간 1조원 이상)

* (농업) 무역수지 악화(연간 4천만불 전후), 생산감소(연간 1천억원 다소 상회)

* (수산업) 무역수지 악화(연간 3천만불 미만), 생산감소(연간 5백억원 전후)

□ (향후 계획) ① TPP 협상 진전동향, ② TPP 참여국과의 양자 협의 경과, ③ 산업별/분야별 심층영향분석 결과검토, ④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TPP 참여 관련 최종입장 결정

□ TPP 참여절차



- (예비 양자협의를)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12개국의 의견 청취 및 가입조건 파악
- (공식 양자협의를) 12개국이 요구한 가입조건에 대한 협상 진행 및 합의 도출
- (협상 참여) 기존 회원국의 참여 승인 및 미 의회의 협상 개시 결정 (미 USTR 참여 승인 후 90일 소요) 이후 TPP 본 협상에 참여 가능

가. 추진 현황

□ RCEP 협상 개요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권역내 포괄적 경제연대'를 추진 목적인 광역 FTA로서
 - ASEAN(10개국)이 기타 6개국과 체결한 FTA의 개방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 중심의 역내경제통합 논의

* ASEAN: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 추진경과

- 아세안이 '11.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6개국에 협상참여를 제안
 - '12.8.30 아세안+6 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RCEP 협상지침」 합의, '12.11.20 협상 개시 선언
- '13.5.9~13(브루나이) RCEP 제1차 협상 개최
- '13.8.19 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에서 RCEP 협상 진전 상황 평가 및 향후 작업계획 논의
 - '15년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설정
- * 최종 공식협상인 제10차 협상('15. 9월)을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합의
- 제5차 협상까지 개최('14.6.21~6.27 싱가포르)하였으며, 6차협상('14.12월 인도) 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RCEP은 역내 경제규모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나,
 -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국이 농업분야 개방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 농수산분야의 추가개방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응
- * RCEP의 역내 경제규모 : GDP 19조달러, 인구 34억

참고

RCEP 교역현황

□ 전체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09	'10	'11	'12	'13
수 출	163,600	217,204	267,588	275,076	292,854
수 입	157,504	207,275	243,557	228,342	235,335
무역수지	6,096	9,929	24,031	46,734	57,519
총교역액	321,104	424,479	511,145	503,418	528,189

□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천불)

구 분		'09	'10	'11	'12	'13
수 출 (B)	합 계	1,703,213	2,213,450	3,181,790	3,288,251	3,384,656
	- 농산물	1,489,677	1,964,963	2,881,313	2,714,536	2,692,738
	- 축산물	86,840	95,326	120,181	274,548	301,152
	- 임산물	126,699	153,161	180,296	299,167	390,766
수 입 (A)	합 계	7,964,873	9,737,540	12,323,060	13,040,623	13,484,071
	- 농산물	4,702,396	5,596,977	7,558,862	7,987,958	8,029,850
	- 축산물	920,088	1,228,757	1,648,100	1,644,140	1,725,381
	- 임산물	2,342,389	2,911,806	3,116,098	3,408,525	3,728,840
무역수지(B-A)		-6,261,657	-7,524,090	-9,141,270	-9,752,372	-10,099,415

□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3)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혼합조제식료품	265,680	쇠고기	950,020
2	기타임산물	203,101	밀	783,534
3	커피조제품	179,225	사탕수수당	632,811
4	귤련	150,289	합판	574,865
5	자당	141,109	화강암제품	544,561
6	제3맥주	139,711	펄프	446,130
7	라면	110,530	침엽수원목	377,985
8	기타설탕과자	97,516	혼합조제식료품	371,040
9	소주	94,609	쌀	340,638
10	파프리카	86,837	대두박	278,757

가. 추진 현황

- 민간 공동연구('03~'09년), 산관학 공동연구('10~'11년) 실시
 - 3국 정상회담('12.5월)에서 협상 개시를 위해 국내절차 및 실무 협의 등 준비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
 - 3차례 사전실무협의를 개최, 협상 기본원칙, 범위, 추진방식 등 합의
 -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 3국 통상장관회의('12.11월)에서 협상개시 선언
 - '13.3월 이후, 5차례 공식협상을 개최, 협상진전 방안 논의
 - 협정 대상 및 범위, 상품 모델리티, 협정문 주요 요소 등을 논의 중이나, 3국간 이견차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미 도출
- * 1차('13. 3월, 서울), 2차('13. 7월, 상하이), 3차('13. 11월, 동경), 4차('14. 3월, 서울), 5차('14. 9월, 북경)

나. 향후 계획

- 한·중 FTA, RCEP 협상과 연계하여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응
 - 한·중·일 FTA는 중국이 참여하고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클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
 - 우리나라와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여타 FTA의 협상추이, 논의동향을 감안하여 농산물 개방수준이 최소화되도록 대응
- 일본에 대해서는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공조하되, 필요시 우리측 관심사항을 제기하는 등 균형 있게 접근

참고 1

한·중·일 경제 통계 ※ 자료 출처 및 기준년도에 따른 수치는 변동 가능

구분	한 국	일 본	중 국	출 처
면적	22.2만km ² (남한:9.9만km ²)	37.8만km ² (남한의 3.8배)	959.7만km ² (남한의 97배)	각국 홈페이지
인구('10)	4,888만명 (세계25위)	1억 2,745만명 (세계10위)	13억 3,830만명 (세계1위)	
GDP	'10 1조 145억불(세계14위) '11 1조 1,639억불(세계15위)	5조 4,588억불 (세계3위) 5조 8,554억불 (세계3위)	5조 9,266억불 (세계2위) 6조 9,885억불 (세계2위)	World Bank IMF(*11년 잠정치) 한국은행
세계GDP 차지비중('10)	3국 전체 : 15.7%('07) → 16.1%('08) → 18.6%('09) → 19.6%('10)			
1인당 GDP	'10 2만 753불 '11 2만 3,749불	4만 2,325불 4만 5,774불	4,283불 5,183불	IMF(*11년 잠정치)
GNI('10)	1조 148억불(세계 13위)	5조 6,016억불 (세계 3위)	5조 9,570억불 (세계 2위)	
1인당 GNI('10)	1만 9,890불	4만 1,850불	4,270불	World Bank
경제성장률	3.6%	△0.9%	9.2%	
외환보유액	3,064억불 (세계7위)	1조 2958억불 (세계2위)	3조 1,811억불 (세계1위)	한국은행
실업률	3.4%	4.6%	4.1%*10	
물가상승률	4.0%	△0.7%*10	5.4%	
전체 교역량	1조 809억불 - 수출 : 5,565억불 - 수입 : 5,244억불 - 수치 : 321.4억불	1조 6,732억불 - 수출 : 8,209억불 - 수입 : 8,523억불 - 수치 : -314억불	3조 6,421억불 - 수출 : 1조 8,986억불 - 수입 : 1조 7,435억불 - 수치 : 1,551억불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진흥회 (Jetro), 중국해관총서
투자	해외투자 : 445억불 외국인투자 : 137억불	해외투자 : 572.2억불*10 외국인투자 : -13.6억불*10	해외투자 : 688억불*10 외국인투자 : 1,160억불	지경부, 수출입은행, 일본무역진흥회 (Jetro), 중국상무부
GDP대비 투자비중('10)	해외투자 : 13.8% 외국인투자 : 12.6%	해외투자 : 15.1% 외국인투자 : 3.9%	해외투자 : 5.1% 외국인투자 : 9.9%	UNCTAD (investment report 2011)
인적교류	출국자 : 1,269만명 입국자 : 979만명	출국자 : 1,699만명 입국자 : 622만명	출국자 : 1,552만명 입국자 : 2,711만명	한국관광공사/JNT O/중국국가여유국
3국간 교류현황				
교역	한국에 있어 일본은, · 수입 2위국(683억불) · 수출 3위국(397억불) · 교역 2위국(1,080억불) · 적자 2위국(286억불) 한국에 있어 중국은, · 수입 1위국(864억불) · 수출 1위국(1,342억불) · 교역 1위국(2,206억불) · 흑자 1위국(478억불)	일본에 있어 한국은, · 수입 6위국(397억불) · 수출 3위국(659억불) · 교역 3위국(1,055억불) · 흑자 3위국(262억불) *홍콩제외 일본에 있어 중국은, · 수입 1위국(1,834억불) · 수출 1위국(1,615억불) · 교역 1위국(3,449억불) · 적자 5위국(219억불)	중국에 있어 한국은,(홍콩제외) · 수입 2위국(1,627억불) · 수출 3위국(829억불) · 교역 3위국(2,456억불) · 적자 2위국(798억불) 중국에 있어 일본은,(홍콩제외) · 수입 1위국(1,946억불) · 수출 2위국(1,483억불) · 교역 2위국(3,429억불) · 적자 4위국(463억불)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총서, 일본무역진흥회 (Jetro)
역내 교역비중	25.4%('05) → 23.2%('06) → 22.6%('07) → 21.5%('08) → 22.5%('09) → 22.1%('10) → 21.4%('11)			IMF
투자	對日투자 : 2.6억불 對中투자 : 48.7억불	對韓투자 : 22.8억불 對中투자 : 72.5억불 *10	對韓투자 : 6.5억불 對日투자 : 3.1억불 *10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일본무역진흥회 (Jetro)
3국간 투자 누계	對日투자 : 39.5억불('68-'10) 對中투자 : 448.5억불('68-'10)	對韓투자 : 263.5억불('62-'11.3) 對中투자 : 624.5억불('87-'10)	對韓투자 : 31.5억불('62-'11.3) 對日투자 : 3.4억불('87-'10)	
인적교류	-	방일 : 165.8만명 방한 : 328.9만명	방중 : 418.5만명 방한 : 222.0만명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 중국국가여유국
한국-양국간 여객운항편수	-	주534회(40개 노선) *김포-헤네다 셔틀편수 주84회 포함	주837회 (52개 노선)	국토해양부 국제항공팀

참고 2

한·일본 교역 현황

□ 對 일본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21,771	28,176	39,680	38,850	34,694
수 입	49,428	64,296	68,320	64,351	60,016
무역수지	-27,657	-36,120	-28,640	-25,501	-25,322
총교역액	71,199	92,472	108,000	103,201	94,710

□ 對 일본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A)	합 계	846	1,023	1,381	1,408	1,287
	농산물	794	967	1,309	1,298	1,184
	축산물	20	25	32	55	46
	임산물	32	31	40	55	57
수입(B)	합 계	341	433	472	488	460
	농산물	301	344	397	356	291
	축산물	10	14	16	47	53
	임산물	30	75	59	85	116
무역수지(A-B)		505	590	909	920	827

□ 對 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3)

(단위 : 백만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제3맥주	139.6	판지	73.4
2	혼합조제식료품	116.2	혼합조제식료품	64.0
3	기타설탕과자	91.7	기타동물성유지	29.3
4	파프리카	86.8	맥주	27.9
5	소주	79.0	방향성물질	27.3
6	김치	65.9	가리비조개	20.5
7	대두박	59.2	펄프	18.7
8	귤련	38.5	청주	14.6
9	기타당	34.0	기타소오스제품	14.0
10	라면	32.0	채소종자	11.4

가. 추진 현황

-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자유화 수준 제고, 교역확대, 對 아세안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베트남, 인니와 양자 FTA 추진
- (베트남) 양국 정상방문('09.10월) 계기 공동작업반 설치에 합의 후 6차 회의까지 개최하여 공동연구 완료('11.10)
 - 국내절차 완료(12.5)와 한-베트남 통상장관 회담 시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 선언('12.8.6) 후 1차 협상('12.9.3~4), 2차 협상('13.5.22~24, 베트남), 3차 협상('13.10.16~18, 부산), 4차 협상('14.3.11.~14, 베트남), 5차 협상('14.5.20~23, 서울), 6차 협상('14.7.28~8.1, 베트남), 7차 협상('14.9.29~10.2, 서울), 8차 협상('14.11.17~22, 베트남) 개최
- (인니) '12.3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14.2월까지 총 7차례 협상 개최
 - '12년 1~2차 협상에서 도입, 원칙, 범위 및 협상운영세칙(TOR) 확정
 - 3차 협상시('13.5.29~31, 부산) 최초 양허안 교환 및 협정문 초안 논의
 - 5차 협상시 양측간 핵심 품목 위주의 리퀘스트 재교환
 - '14년 중 한·인니 CEPA 타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별 여건을 감안한 투자확대, 능력배양 지원, 협력 확대 등과 연계하여 추가 개방이 최소화 되도록 대응
- * 베트남, 인니는 주로 열대성농산물을 생산·수출하기 때문에 국내농산물과 경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KREI 분석)

참고 1

한 · 베트남 교역현황

□ 對 베트남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7,149	9,652	13,465	15,954	21,088
수 입	2,370	3,331	5,084	5,718	7,170
무역수지	4,779	6,321	8,381	10,236	13,917
총교역액	9,519	12,983	18,549	21,672	28,258

□ 對 베트남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천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A)	합 계	87,389	121,137	213,967	283,976	353,744
	농 산 물	56,097	75,233	133,589	169,407	174,739
	축 산 물	22,893	31,431	34,742	51,753	61,033
	임 산 물	8,399	14,473	45,636	62,816	117,972
수입(B)	합 계	207,637	247,164	421,479	573,391	592,742
	농 산 물	150,983	135,464	256,517	349,516	317,400
	축 산 물	526	329	1,240	7,099	10,915
	임 산 물	56,128	111,371	163,722	216,776	264,427
무역수지(A-B)		-120,248	-126,027	-207,512	-289,415	-238,998

□ 對 베트남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3)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기타임산물 103,321	칩 84,072
2	귤런 56,403	커피 70,805
3	닭고기 22,091	타피오카 62,265
4	가죽 16,023	합판 43,125
5	혼합조제식료품 15,874	기타 가구 20,535
6	기타사료용조제품 12,638	에틸알코올 32,016
7	과당 8,836	대두유 21,916
8	섬유판 7,826	후추 18,612
9	기타베이커리제품 7,649	캔디 18,575
10	조제분유 6,095	기타과실 15,556

참고 2

한 · 인도네시아 교역 현황

□ 對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6,000	8,897	13,564	13,946	11,574
수 입	9,264	13,986	17,216	15,678	13,118
무역수지	-3,264	-5,089	-3,652	-1,732	-1,614
총교역액	15,264	22,883	30,780	29,624	24,692

□ 對 인도네시아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천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A)	합 계	55,283	84,679	113,407	140,693	154,097
	농산물	52,113	77,452	103,465	106,271	115,201
	축산물	362	360	820	11,532	7,952
	임산물	2,808	6,867	9,122	22,890	30,944
수입(B)	합 계	593,399	816,463	933,439	942,799	1,015,231
	농산물	232,120	286,224	413,219	416,861	423,836
	축산물	494	467	452	11,245	10,400
	임산물	360,785	529,772	519,768	514,693	580,995
무역수지(A-B)		-538,116	-731,784	-820,032	-802,106	-861,134

□ 對 인도네시아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3)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커피조제품	42,371
2	기타임산물	24,942
3	기타사료용조제품	17,429
4	혼합조제식료품	14,690
5	대두박	6,220
6	자당	4,270
7	기타양모, 삼수모, 조수모 등	3,068
8	소원피	2,877
9	효소	2,534
10	판지	2,366
	펠프	362,959
	합판	82,591
	파암넛유박	74,018
	야자유	53,319
	야자,코프라박	49,986
	혼합조제식료품	45,661
	밀기울	43,464
	성형목재	40,777
	당밀	37,444
	팜유	33,009

